

Japan's Health Functional Food System Handbook



# 2017 일본 보건기능식품제도 핸드북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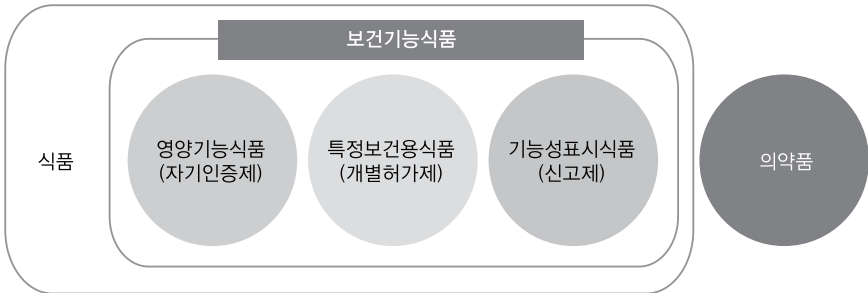
<b>1</b>	<b>일본 보건기능식품제도 개요</b>	4
	가. 영양기능식품	5
	나. 특정보건용식품	12
	다. 기능성표시식품	15
<b>2</b>	<b>수출기업 인증 취득 시 유의점</b>	21
	가. 외국기업의 주의사항	21
	나. 인증취득 비용	25
	다. 사례별 절차	28
<b>3</b>	<b>보건기능식품 시장현황</b>	31
	가. 시장규모 및 추이	31
	1) 특정보건용식품의 시장규모 및 구성	31
	2) 기능성표시식품의 시장규모 및 구성	33
	3) 영양기능식품의 시장규모 및 구성	33
	나. 소비자 인지도	35
	1) 보건기능식품제도의 인지도	35
	2) 보건기능식품의 세부 인지 현황	36
	3) 특정보건용식품 섭취경험	37
	4) 기능성표시식품 섭취 시 기대되는 기능	38
	5) 출시 희망 기능성표시식품 종류	40
	다. 일본기업의 제도 이용현황	40
	1) 특정보건용식품	40
	2) 기능성표시식품	43
	3) 영양기능식품	46
	라. 인증 취득/신고 수리 · 표시의 장단점	47
<b>4</b>	<b>사례연구</b>	48

# 1. 일본 보건기능식품제도 개요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제도는 국민 식생활 상황에 맞춰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관해 설정한 기준으로, 이를 충족할 경우 '보건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하고자 하는 기능 등의 차이에 따라 영양기능식품, 특정보건용식품,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나뉜다.

단, 해외기업의 직접적인 인증 및 신고는 제도의 구조상 일본에서 법인격을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치하거나 대리점(수입판매원)을 통해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건기능식품제도의 구분】



제도명	표시요건	제도의 개요
영양기능식품	자기인증제 (규격기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소비자청)에서 정한 영양성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li> </ul>
특정보건용식품	개별허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의 상태를 조절합니다.', '지방의 흡수를 완화합니다.' 등 특정한 보건의 목적이 기대되는(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도움) 식품으로서 그 기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li> </ul>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보건용식품'은 국가(소비자청)에 신청 후 식품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 표시내용에 대해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필요하나, '기능성표시식품'은 신고주체가 되는 식품관련 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신고하고 신고내용이 적절한지 국가(소비자청)에서 검토 후 수리</li> </ul>

## 가. 영양기능식품

영양기능식품은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하여 판매되는 식품으로 영양기능식품으로서 판매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영양성분량이 국가가 정한 하한·상한치 기준 이내여야 한다.

영양성분표시와 섭취상 주의사항, 소비자청 장관의 개별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표시 등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국가에 허가신청이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 1) 영양기능식품의 대상이 되는 식품

- 포장용기에 들어있는 일반소비자 대상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

### 2) 표시 가능한 영양성분

지방산(1종류)	n-3계열 지방산
미네랄(6종류)	아연, 칼륨, 칼슘, 철, 구리, 마그네슘
비타민(13종류)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오틴, 엽산
	비타민 A, B1, B2, B6, B12, C, D, E, K

### 3) 표시사항

- 필요한 표시사항은 글자 크기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해야 한다.(표시 가능면적이 약 150cm<sup>2</sup> 이하인 경우는 5.5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가능)
- 신선식품이라도 영양기능식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표시사항을 기재한 포장용기에 넣어 판매해야 한다.
  - ① '영양기능식품' 표시 및 해당 기능성분 명칭
    - 영양기능을 표시하는 영양성분의 명칭을 '영양기능식품'의 표시에 이어서 표기 (표시 예) 영양기능식품(비타민C)
    -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복수의 영양성분을 영양기능으로 표시할 경우, 표시순서는 정해지지 않음
  - ② 영양성분의 기능
    - 영양기능식품 규격기준(식품표시법 별표11)에 따라 정해진 영양기능표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영양성분의 기능 관련 내용을 변경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불가
  - ③ 1일 섭취기준량
    - '○정~○정 복용하십시오.'와 같이 범위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

④ 영양성분량 및 열량(영양성분 표시)

- 1일 섭취기준량 당 영양성분량 및 열량을 표시하고 기능을 표시할 영양성분량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값을 표시(영양기능식품에는 합리적 추정에 따른 값의 표시는 인정되지 않음)
- 또한, 1일 섭취기준량을 범위로 표시할 경우, 최소치와 최대치가 각각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되는 영양성분량이 영양기능식품의 규격기준에 적합해야 함

⑤ 섭취방법

(표시 예) 물과 함께 드십시오 등

⑥ 섭취상의 주의사항

- 영양기능식품 규격기준(식품표시법 별표11)에 따라 정해진 주의사항 표시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내용을 변경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불가

⑦ 균형잡힌 식생활을 권장하는 문구

- '주식(主食), 주채(主菜)와 부채(副菜) 기본으로 균형잡힌 식사'이라고 표시

⑧ 소비자청 장관의 개별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문구

- '본 제품은 특정보건용식품과 달리, 소비자청 장관에 의한 개별심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표시

⑨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된 기능을 표시하는 영양성분량이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 : 일본인이 1일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값으로서 식사섭취 기준을 바탕으로 성별, 연령계급별 인구에 따라 가장 평균한 값

⑩ 특정 대상에게 해당하는 주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주의사항

⑪ 조리 또는 보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주의사항

⑫ 보관방법(신선식품)

- 상온보관 외에 기타 보관방법에 대해 유의사항이 없을 시에는 생략가능

⑬ 기타(신선식품)

#### 4) 표시 금지사항

- 영양기능식품의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영양성분 이외의 성분 기능을 표시하거나 특정보건 용도의 표시는 불가하다.

(금지 예) 다이어트 가능, 눈이 피로한 분에게

- 소비자청 장관이 개별적으로 심사 등을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된다.

(금지 예) 소비자청 장관 인정 규격기준 적합

## 5) 영양기능식품 표시가 적합하지 않은 식품

- 맥주 등 알코올음료와 나트륨, 당분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만드는 식품 등은 영양기능식품 표시를 함에 따라 해당 식품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영양표시 식품 표시에 부적합하다.

## 6) 영양기능식품의 로고

- 영양기능식품은 별도의 로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제품에 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 7) 영양기능식품 제품 건수

- 영양기능식품은 영양성분 규격기준(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되는 영양성분 함량의 상한, 하한)에 적합하면 모두 표시 가능하므로 제품 건수는 집계되지 않는다.

## 8) 영양기능식품 제품 이미지 (예시)

	
<p>영양제(비타민C)</p>	<p>즉석밥(카레맛)</p>

【영양기능식품 표시 유의사항】

상품명 : ●▲ 영양기능식품(비타민C)

영양기능을 표시하는 영양성분의 명칭을 '영양기능식품'의 표시에 이어서 표기

비타민C는 피부나 점막의 건강유지를 도와주며, 항산화작용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식생활은 주식, 주채, 부채를 기본으로 식생활의 균형을」

영양기능식품의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영양성분 이외의 성분 기능을 표시하거나 특정보건용도의 표시 불가

명칭 : 비타민C함유식품  
 원재료명 : / ,  
 상미기간 : ○○에 기재  
 내용량 : ○○g  
 제조자 : △△주식회사

영양성분표시는 1일 섭취기준량당 양을 표시한다. 또한 주정치(허용차의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값)는 인정되지 않음

영양성분표시 1병당		
열량 ○kcal	단백질 ○g	지질 ○g
탄수화물 ○g	식염상당량 ○g	비타민C ○mg

기능을 표시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방법(식품표시법 별표9)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값을 표시할 것

•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된 기능표시를 하는 영양성분량이 영양소등표시기준치(18세 이상, 기준열량 2,200kcal)에 차지하는 비율 : 비타민C ○%

• 1일 섭취기준량 : 1일당 1병을 기준으로 드십시오.

식품표시기준 별표11에 정해진 섭취상의 주의사항

• 섭취방법 및 섭취상의 주의사항 : 본 제품은 다량섭취에 의해 질병이 치료되거나 건강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조리 및 보존방법 : 보존은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하여 개봉 후에는 뚜껑을 확실히 닫고 가급적 빨리 드십시오.

소비자청 장관이 개별적으로 심사 등을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말 것

(특정 대상에 대해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 해당 주의사항)

본 제품은 특정보건용식품과 달리 소비자청 장관에 의한 개별심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영양기능식품 표시사례】

韩国産6年根 こうらいこうじんちゃ 美・健康茶

紅蔘エキス 450mg配合 1包中

# 高麗紅蔘茶

GOLD

Korean Red Ginseng Tea is manufactured with best raw materials selected carefully and its quality is guaranteed by Korean Ginseng 10-Standard.

高麗紅蔘茶は厳選された高麗の産地産原料に20年産以上の品質を有し、その品質が品質基準に適合するように製造されています。

KOREAN RED GINSENG TEA GOLD

食生活は、主食、主菜、副菜を基本に、食事のバランスを

NET WT. 90g (3g×30包)

①

栄養機能食品(ビタミンC)

品名	高麗紅蔘茶	栄養成分表示【1包(3g)当たり】	
名称	高麗人蔘(紅蔘)根加工食品	糖	11.90kcal
原材料名	ブドウ糖、高麗人蔘(紅蔘)エキス、乳糖、ビタミンC	タンパク	0.01g
内容量	90g(3g×30包)	脂質	0.01g
賞味期限	特外下部に記載	水	2.95g
保存方法	高温・多湿及び直射日光を避けて保管してください。	炭水化物	0.52mg
原産国	大韓民国	ナトリウム	50mg
輸入者	株式会社高麗貿易ジャパン 大阪市鶴見区今津中1-10-24	高麗人蔘(紅蔘)エキス	450mg
【お問い合わせ】0120-930-286 10:00~16:00(土日祝 除く)		ビタミンC	0.02%
		*1日あたり、栄養素等表示基準値に占める割合(%)	
		*ビタミンCは皮膚や粘膜の健康維持を助けるとともに抗酸化作用を持つ栄養素です。	

【おまけ】トクミホト

栄養補助食品として1日1~2包を目安に、1包当たり100~150mlのお湯又は水に溶かして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

【ご使用上の注意】

- \*開封後はお早目に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
- \*原材料をご参照の上、食品アレルギーのある方は、お召し上がりにならないでください。また体調や体質によりまれに合わない場合がありますので、その場合は服用を中止してください。
- \*必ず特許取得済みの高麗産原料の「高麗紅蔘」を使用しております。
- \*本品は多量摂取により疾病が治癒したり、より健康が増進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1日の摂取目安量を守ってください。
- \*本品は、特定保健用食品とは異なり、消費者庁長官による個別審査を受け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

ロット番号

賞味期限

8 609013 358090

③

⑤

⑩

⑥

⑧

④

⑨

②

【영양기능식품 규격기준(식품표시법 별표11)】

영양성분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되는 영양성분량		영양기능표시	주의환기 표시
	하한치	상한치		
n-3계 지방산	0.6g	2.0g	n-3계지방산은 피부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본 제품은 다량으로 섭취해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켜주세요.
아연	2.64mg	15mg	아연은 미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피부와 점막의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단백질·핵산의 대사에 관여하여,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본 제품은 다량으로 섭취해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켜주세요. 아연의 과다섭취는 구리의 흡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유아·소아는 본 제품의 섭취를 피해주세요.
칼륨	840mg	2,800mg	칼륨은 정상 혈압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본 제품은 다량으로 섭취해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켜주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은 본 제품의 섭취를 피해주세요.
칼슘	204mg	600mg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본 제품은 다량으로 섭취해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켜주세요.
철	2.04mg	10mg	철은 적혈구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구리	0.27mg	6.0mg	구리는 적혈구 형성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구리는 다량의 체내 효소의 정상적인 활동과 뼈 형성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본 제품은 다량으로 섭취해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켜주세요. 유아·소아는 본 제품의 섭취를 피해주세요.
마그네슘	96mg	300mg	마그네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은 많은 체내 효소의 정상적인 활동과 에너지 생산을 도우며 혈액순환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본 제품은 다량으로 섭취해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다량으로 섭취하면 설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켜주세요. 유아·소아는 본 제품의 섭취를 피해주세요.
나이아신	3.9mg	60mg	나이아신은 피부와 점막의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본 제품은 다량으로 섭취해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켜주세요.
판토텐산	1.44mg	30mg	판토텐산은 피부와 점막의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비오틴	15 $\mu$ g	500 $\mu$ g	비오틴은 피부와 점막의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영양성분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되는 영양성분량		영양기능표시	주의환기 표시
	하한치	상한치		
비타민A	231 $\mu$ g	600 $\mu$ g	비타민A는 야간의 시력 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A는 피부와 점막의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본 제품은 다량으로 섭취해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켜주세요.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비타민B 1	0.36mg	25mg	비타민 B 1는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피부, 점막의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본 제품은 다량으로 섭취해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켜주세요.
비타민B 2	0.42mg	12	비타민 B 2는 피부와 점막의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B 6	0.39mg	10mg	비타민 B6은 단백질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피부, 점막의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B12	0.72 $\mu$ g	60 $\mu$ g	비타민 B 12는 적혈구 형성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	30mg	1,000mg	비타민 C 는 피부와 점막의 건강유지를 도우며, 항산화작용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D	1.65 $\mu$ g	5.0 $\mu$ g	비타민 D 는 장관(腸管)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뼈 형성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E	1.89mg	150mg	비타민E는 항산화작용에 따라 체내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세포의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K	45 $\mu$ g	150 $\mu$ g	비타민K는 정상적인 혈액응고 기능을 유지하는 영양소입니다.	본 제품은 다량으로 섭취해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켜주세요. 혈액응고 저지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은 본 제품의 섭취를 피해주세요.
엽산	72 $\mu$ g	200 $\mu$ g	엽산은 적혈구 형성을 돕는 영양소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에 기여하는 영양소입니다.	본 제품은 다량으로 섭취해도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1일 섭취기준량을 지켜주세요. 엽산은 태아의 정상적인 발육에 기여하는 영양소지만, 다량 섭취로 태아의 발육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 나. 특정보건용식품

특정보건용식품(토쿠호)은 신체의 생리학적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기능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한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표시할 수 있는 식품이다.

이러한 보건 용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최종제품의 생리적 기능과 특정 보건기능의 유효성과 안전성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에 관한 심사를 거치고, 소비자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건강증진법 제26조),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 증표를 부여받는다.

특정보건용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질병위험저감표시 특정보건용식품,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총 4가지로 구분하여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 특정보건용식품

건강증진법 제26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동법 제29조 제1항의 승인※을 받아 식생활에서 특정한 보건 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 대해 섭취를 통한 해당 보건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표시한 식품이다.

※ '승인'은 일본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외국에서 특정용도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제도 시행 후 승인사례는 단 1건

### ○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 기존의 허가 실적이 충분한 경우 등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관여성분에 대해 규격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위원회의 개별심사 없이 사무국에서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하는 특정보건용식품이다.

- 규격기준으로 정해진 관여성분은 난소화성텍스트린 등 식이섬유류, 대두올리고당 등 올리고당류가 있으며 1제품에 동일부류의 관여성분을 복수 포함하거나 1일 섭취기준량에 정해진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 식품의 형태는 기존에 허가된 제품의 것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관여성분과 동종의 원재료(타 식이섬유 또는 올리고당)을 배합하지 않아야 한다. 과다섭취에 따른 섭취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적으로 과다섭취는 해당 식품으로 섭취하는 양의 3배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표시할 수 있는 보건용도 및 섭취상의 주의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나 용기포장에 관여성분 이외의 원재료에 관한 사항을 강조해서 표기하는 등 본 제도(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표시를 할 수 없다.  
(표시 예) 난소화성텍스트린(식이섬유로서)의 경우, ○○(관여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의 상태를 조절합니다.

○ 질병위험 저감표시 특정보건용식품

관여성분의 질병위험 감소효과가 의학적, 영양학적으로 확립된 경우 질병위험 저감표시를 인정하는 특정보건용식품이다.

- 질병위험저감표시가 인정되는 관여성분 : 칼슘, 엽산

○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특정보건용식품의 심사에서 요구되는 유효성의 과학적 근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정 수준의 유효성이 확인된 식품을 한정적인 과학적 근거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대상으로 인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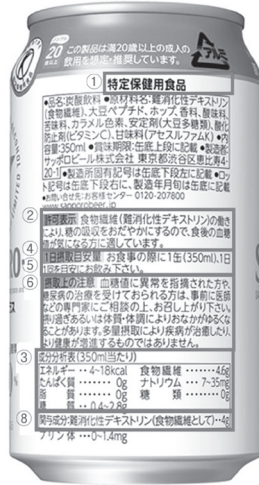
(표시 예) ○○를 포함하고 있어 근거는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1) 필수 기재사항

○ 필수 기재사항은 전부 글자 크기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표시 가능 면적이 약 150cm<sup>2</sup> 이하인 경우는 5.5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가능)

- ① ‘특정보건용식품’이라는 문구
- ② 허가 등을 받았다는 표시내용
- ③ 영양성분(관여성분 포함) 함유량 및 열량
- ④ 1일 섭취기준량
- ⑤ 섭취방법
- ⑥ 섭취상의 주의사항
- ⑦ 균형 잡힌 식생활을 권장하는 문구
- ⑧ 관여성분에 대해 영양소 등 표시기준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섭취기준량에 포함된 기능을 표시하는 해당 관여성분의 영양소 등 표시 기준치에 대한 비율
- ⑨ 조리 또는 보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주의사항

【特定保健用食品 표시사항 (예시)】



2) 특정보건용식품 허가마크

- 일본 건강증진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일본 내 판매용은 허가, 외국 판매용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p>특정보건용식품 (질병위험저감표시, 규격기준형 포함)</p>	<p>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p>
	
<p>소비자청 허가/특정보건용식품</p>	<p>소비자청 허가/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p>

### 3) 특정보건용식품 허가 및 승인 건수

- 2017년 4월 10일 기준 총 1,123건(허가 1,122, 승인 1)으로 특정보건용식품 978건, 질병위험 저감표시 특정보건용식품 12건,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131, 조건부 특정보건용식품 1건이다.

【특정보건용식품 제품 이미지】

	
<p>식용유</p>	<p>녹차(PET)</p>

#### 다. 기능성표시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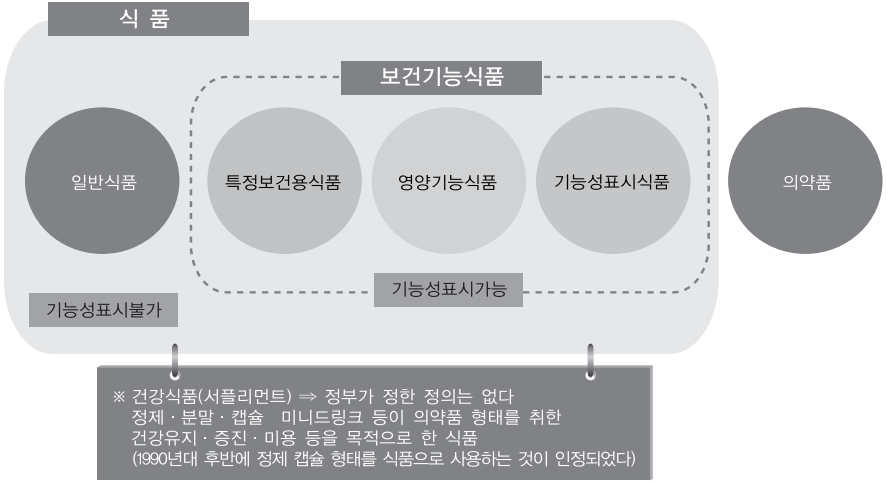
2014년까지 일본의 기능성식품시장은 국가가 개별적으로 허가한 특정보건용식품(토쿠호)과 국가의 규격기준에 적합한 영양기능성식품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2013년 1월에 규제개혁회의를 발족하고 검토 항목의 하나로 ‘일반건강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정비’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영양기능성식품에 대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등 대상성분이 한정되어 있고, 특정보건용식품은 식품마다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허가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 장벽이 높다는 이유 등이 현행제도에 대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그 결과, 2013년 6월 14일 내각에서 결정된 ‘규제개혁 실시계획’ 및 ‘일본재건전략’에서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성식품 외 이른바 건강식품을 비롯한 보건의능을 가진 성분을 포함한 가공식품 및 농림수산물에 대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었다. 소비자 정책을 관할하며 식품표시 기준책정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청 산하에 ‘식품의 새로운 기능성표시제도에 대한 검토회’가 설치되었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8회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소비자청에서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2015년 3월 31일에 공표되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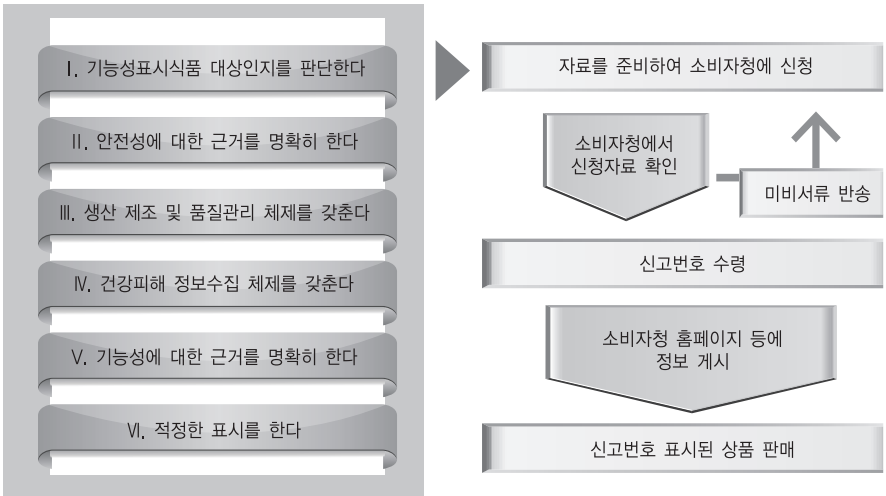
‘기능성표시식품’은 식품의 범주 안에서 기능성(보건용도) 표시가 가능한 ‘보건의능식품’제도의 틀 속에서 도입되었다. 식품관련사업자의 책임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품 포장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일본 소비자청에 신고하는 식품이 기능성표시식품이다. 단, 특정보건용식품과는 달리 국가가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청 장관의 개별허가를 받은 제품은 아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의 위치】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 및 처리절차】





## 1)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사항

- 기능성표시식품은 다음의 사항을 판매일 60일 전에 소비자청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① 표시내용
  - ② 식품 관련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
  - ③ 안전성 근거에 관한 정보
  - ④ 기능성 근거에 관한 정보
  - ⑤ 생산·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정보
  - ⑥ 건강피해 정보수집 체제
  - ⑦ 기타 필요사항

## 2) 기능성표시식품 대상 품목

- 포장용기에 들어있는 일반소비자 대상 보조제,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 품목이 해당되거나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된다.
  - 질병을 앓고 있는자, 미성년자, 임신부(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자 포함), 수유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
  - 기능성 관여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
  - 기능성 관여성분이 식사섭취 기준에 정해진 영양소(비타민, 미네랄, 올리고당, 복합지질 등)
  - 특별용도식품(특정보건용식품 포함), 영양기능식품, 알코올 함유 음료
  -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당질(단당류 또는 이당류로 당알코올이 아닌 것에 한함), 나트륨 과잉섭취로 이어지는 제품
- ※ 식사섭취 기준이 정한 영양소이나 기능성표시식품의 관여성분으로 인정되는 영양소  
단백질(각종 아미노산, 각종 펩타이드), n-6계 지방산( $\gamma$ -리놀렌산, 아라도긴산), n-3계 지방산( $\alpha$ -리놀렌산, EPA, DHA), 식이섬유(난소화성 텍스트린, 구아검분해물), 비타민 A(프로비타민A카로티노이드[ $\beta$ -카로틴,  $\alpha$ -카로틴,  $\beta$ -크립토산틴 등])

## 3) 기능성표시식품 필수 표시사항

- 필수 기재사항은 전부 글자 크기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표시가능면적이 약 150cm<sup>2</sup> 이하인 경우는 5.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가능)
- 신선식품이라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한 포장 용기에 넣어 판매해야 한다.
  - ① '기능성표시식품' 표시
  - ② 과학적 근거가 있는 기능성 관여성분 및 해당 성분 또는 해당 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기능성에 관한 표시 (예시)】

신고표시내용  
(보건용도)

국가의 개별심사를 받은 제품이아님을 알리는 문구  
(사업자 책임)

각국 권장섭취량

섭취 상 주의점

기능성 판여성분이 표시 수칙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문구 (신선식품과 단일 농수산물용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

'기능성표시식품'을 알리는 문구

신고번호

기능성서본의 서취량

영양성분 표시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님을 알리는 문구  
(의약품이 아님)

균형 잡힌 식생활을 권장하는 문구

사업자의 연락처

【기능성표시식품 표시사례】

6. 機能性表示食品  
表示番号: ABO

電子レンジで加熱する場合、必ずこの記号をよんでください。

16. 栄養成分表示

7. 摂取方法

13. 注意

14. 事業者の責任

15. 消費者庁長官による個別審査を受けたものではない

大豆イソフラボン  
Bean Sprout  
子大豆もやし

機能性表示食品

大豆イソフラボン 56mg  
(アグリコン換算) 36mg

大豆イソフラボン・大豆もやしの  
健康情報はこちらから  
[Eメール] [abo@saibdc.or.jp](mailto:abo@saibdc.or.jp) | 電話 | [053-525-1016](tel:053-525-1016)  
<http://www.saibdc.or.jp>

9. 摂取の方法  
加熱調理用野菜

12. 調理又は保存方法の注意

10. 摂取上の注意

2. 表示

8. 事業者の責任

#### 4) 기능성표시식품 표시 금지사항

- 질병 치료 효과 또는 예방효과를 암시하는 용어  
(금지 예) 꽃가루 알레르기에 효과 있음, 당뇨병 환자에게 추천, 감기 예방에 효과
- 소비자청 장관에게 신고한 기능성 관여성분 이외의 성분을 강조하는 용어
  - ※ 영양성분을 보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시 및 영양성분 또는 열량의 적절한 섭취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청 장관에게 신고한 기능성 관여성분 이외의 성분을 강조하는 용어
    - 강조하는 용어는 ‘~가득, ~듬뿍’, ‘~강화’ 등
    - 함유량을 색과 크기 등으로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
    - 주요 면에 성분명만을 눈에 띄게 하는 표시와 기능성 관여성분이라는 소비자에게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금지 예) ~(신고한 기능성 관여성분 이외의 성분)의 파워
- 소비자청 장관의 심사,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  
(‘소비자청 승인’, ‘소비자청 장관 허가’, ‘~정부기관도 인정’등 국가와 공적기관에 신고 및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

#### 5) 정보 표시

-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된 정보는 소비자청의 웹사이트에 공개됨. 신고자도 자신의 웹사이트와 인쇄물로 판매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책임자

- 기능성표시식품은 신고자(일본 내 법인을 보유한 식품 관련 사업자)가 표시내용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 7) 기능성표시식품의 마크

- 기능성표시식품은 별도의 마크가 존재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제품에 전면에 ‘기능성표시 식품’이라는 문자로 표기하며 신고한 기능성 표시내용, 소비자청 장관에 의한 개별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구,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다.

#### 8) 기능성표시식품 신고건수

- 총 882건(2017.5.1 기준)

9) 기능성표시식품 제품 이미지 (예시)



보조제(눈 피로, 중성지방 해소)



토마토주스(혈중 콜레스테롤)

## 2. 수출기업 인증 취득 시 유의점

### 가. 외국기업의 주의사항

- 일본에 주소를 보유한 법인의 인증·신고

특정보건용식품은 해외기업의 직접 인증, 신고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기능성표시식품은 불가능하므로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치하거나 대리점(수입판매원)을 통해서 소비자청에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특정보건용식품도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소비자청과 긴밀한 연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성표시식품과 같이 일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리점(수입판매원)을 통해 수속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외기업의 인증·신고】

제도	해외기업	유의점
특정보건용식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보건소를 통해서 「표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는 관할성청인 <b>소비자청에 서류를 직접 제출</b>.</li> <li>• 특정보건용식품의 인증에 필요한 임상시험은 <b>일본인</b>을 대상으로 실시. 특히 개별허가형, 규격기준형에서 요구되는 「<b>과잉섭취 안정성 시험</b>」은 <b>일본인 대상 실험 필수</b></li> <li>• 해외사업자에게 특정보건용식품 신청이 인정된 경우, 「허가」가 아니라 「승인」의 취급.</li> </ul>
기능성표시식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일본에 법인을 보유한 사업자만</b> 신고 가능</li> </ul>

#### 【해외기업의 전개 가능성】

제도	해외기업	유의점
영양기능식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하의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을 엄수한다면, 수입품이라도 표기는 가능</li> </ul>

- 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일본에서는 식품에 대해 세부 식품표시 규정이 있어 일본에 수출하는 가공식품도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편 2015년 4월 1일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새로운 식품표시법 시행)

일본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가 필요한 9개 항목,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가 필요한 3개 항목 이외에 임의로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일반 소비자 대상 가공식품의 의무표시 항목】**

1. 명칭(가공식품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
2. 보존 방법(개봉 전 보존 방법)
3.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4. 원재료명
5. 첨가물<sup>1)</sup>
6. 내용량 또한 고휘량 및 내용 총량
7. 영양성분량 및 열량<sup>2)</sup>
8. 식품관련 사업자 성명, 명칭, 주소
9. 제조소 또는 가공소의 소재지 및 제조자 또는 가공자의 이름 또는 명칭 등  
※ 수입식품은 수입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및 수입업자의 성명 및 명칭

**【일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표시가 필요한 항목】**

1. 알레르겐 (특정 원재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sup>3)</sup>
2. L-페닐알라닌 가공물을 포함한다는 표기
3. 특정보건용식품에 관한 사항
4.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한 사항
5. 유전자 재조합 식품에 관한 사항
6. 유아용 적격 적용 식품
7. 원재료 산지명
8. 원산국명(수입품의 경우)

**【임의표시】**

1. 특색이 있는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
2. 영양성분(의무 표시 성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및 나트륨을 제외한 식이섬유나 비타민C 등의 영양성분※)  
※영양성분 내, 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의 양에 대해서는 표시를 권장
3. 나트륨의 양
4. 영양기능식품에 관하는 영양성분의 기능(영양기능식품)<sup>4)</sup>
5. 영양성분을 보급할 수 있고 영양성분 또는 열량의 적절한 섭취가 가능하다는 취지
6. 당류(단당류 또는 이당류이며, 글리시톨이 아닌 것에 한정)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취지<sup>5)</sup>
7.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취지(“식염 무첨가”)

## 1) 첨가물

- 사용되는 모든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식품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 지정 첨가물(국가가 안전성을 평가한 454개 품목)
- 기존 첨가물(일본 내에서 사용되어 예외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사용·판매가 인정된 365개 품목)
- 천연 향료(동물성 추출 물질로 식품에 향을 부여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
- 일반 첨가물(통상 식품,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

- ※ 지정 첨가물 및 기존 첨가물은 사용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이 리스트화 되어 있어 해당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식품 첨가물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 천연 향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량이 미량이며 오랫동안 건강 피해가 없으므로 사용 인증을 받은 것이며, 『천연 향료 기원 물질 리스트』에 612개 품목의 기원 물질이 수록되어 있다.
- ※ 일반 첨가물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음식에 제공되는 첨가물로 사용되는 품목 리스트』에 약 100개 품목 수록되어 있지만, 모두 식품이 대상이다.

- 용기에 포장된 가공식품은 원칙적으로 사용된 모든 식품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 『첨가물』과 첨가물 이외의 『원재료(식품)』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시
- 특정 원재료 등(특정 원재료 7개 품목※ 및 준특정 원재료 20개 품목※ 등)을 원재료로 포함한다는 취지 또는 식품에 포함되는 첨가물이 특정 원재료로부터 추출했다는 취지를, 원칙적으로 원재료명 바로 뒤에 괄호를 쳐서 표시(※알레르겐 항목으로 상세 기술)
  - 원재료에 특정 원재료 등을 포함한 경우의 표기 (예) …효모 추출물(밀 추출)
  - 첨가물이 특정 원재료 등을 추출한 경우의 표기 (예) …유화제(대두 추출)
- 식품에 포함되는 모든 특정 원재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괄표시

## 2) 영양성분량 및 열량

### 【영양성분 함유량 표시】

- 1단위 (100mg, 100ml, 한 끼 식사분, 1포장 등) 당으로 표시
- 열량kcal,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또는 당질, 식이섬유), 나트륨의 순서로 표시(필수 5개 항목)
- 타 영양성분(칼슘, 비타민C 등)은 나트륨 다음에 표시

## 3) 알레르겐

- 이하의 특정 원재료를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및 특정 원재료에서 추출된 식품에는 알레르겐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준특정 원재료는 표시를 권장하고 있다.

**【특정 원재료~ (7개 품목) ...의무】**

계란 / 우유 / 밀 / 땅콩 / 메밀 / 게 / 새우

**【준특정 원재료~ (20개 품목) ...권장】**

전복 / 오징어 / 연어알 / 오렌지 / 캐슈너트 / 키위 / 소고기 / 호두 / 깨 / 연어 / 고등어 / 대두 / 닭고기 / 바나나 / 돼지고기 / 송이버섯 / 복숭아 / 참마 / 사과 / 젤라틴

- 원칙적으로, 원재료 다음에 괄호를 사용하여 특정 원재료 등을 포함했다는 취지를 표시해야 하나(개별표시의 원칙), 예외적으로 『일부 ○○를 포함』 표기(일괄표시)가 인정되고 있다.

**4) 영양성분 보급 가능 취지 및 영양성분 또는 열량의 적절한 섭취 가능 취지**

- 고품질 또는 과잉섭취가 건강 유지와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성분에 대해, 보급과 적절한 섭취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표시가 영양 강조 표시이다. 일본의 소비자는 당질과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당질과 칼로리를 제한 또는 함유하지 않은 식품·음료가 인기가 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C 등, 섭취 필요성이 널리 알려진 영양소는 고함유 또는 강화된 식품·음료를 소구할 필요가 있다.

**‘다량 함유’ 표시  
(예: ‘비타민C 듬뿍’)**

- ◆ 식품100g(음료100ml) 당, 또는 100kcal당으로 규정된 기준치 이상의 영양성분을 함유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량함유’ 표시 및 ‘포함’ 표시가 가능하다. 기준치는 영양성분마다 정해져 있다.
- ◆ ‘다량함유’ 표시는 ‘다량’, ‘풍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뜻하며, ‘포함’ 표시는 ‘공급’, ‘함유’, ‘사용’, ‘첨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뜻한다.

**‘불포함’ 표시  
(예: ‘당질 ZERO’)**

- ◆ 식품100g(음료100ml) 당, 또는 100kcal당으로 규정된 기준치 미만의 식품에 대해서 ‘불포함’ 표시 및 ‘소량함유’ 표시가 가능하다. 기준치는 영양성분마다 정해져 있다.
- ◆ ‘불포함’은 ‘無’, ‘ZERO’, ‘NON’,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뜻하며, ‘미사용’, ‘무첨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량함유’는 ‘低’, ‘少’, ‘Light’, ‘Die’,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뜻한다.

**‘강화’ 표시  
(예: ‘칼슘2배’)**

- ◆ 비교대상 식품과 성분량 차이가 100g(음료100ml)당, 또는 100kcal당으로 규정된 기준치 이상의 식품에 대해서는 ‘강화표시’가 가능하다. 단, ‘단백질 및 식물성유’에 대해서는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강화된 비율이 25%이상의 것에 한한다.
- ◆ 기준치는 영양성분마다 정해져 있으며, 강화된 양 또는 비율과 비교대상 성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저감’ 표시  
(예: ‘칼로리 1/2’)**

- ◆ 저감 표시를 하는 경우열량,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및 나트륨에는 비교대상 식품과 성분량 차가 100g(음료100ml)당으로 규정된 기준치 이상의 절대치에 타 식품과 비교하여 저감된 비율이 25%이상의 상대치가 필요하다.
- ◆ 비교대상 식품 및 저열량 또는 비율을 가늠하지 않고, 단순히 ‘低’ 등으로 표시된 경우는 저감된 취지 표시가 아니라, 낮은 취지의 표시가 된다.

**5) 당류(단당류 또는 이당류로, 글리시톨이 아닌 것에 한함) 무첨가 취지**

- 당류 무첨가 취지의 표시 예는 ‘당류 무첨가’, ‘설탕 미사용’, 기타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다. ‘논 슈거’, ‘슈거 리스’와 같은 표시는 당류에 대해서는 ‘불포함’ 표시에 해당한다.
- 당류를 무첨가 취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CODEX(공식사단법인 일본식품위생협회)의 영양표시 가이드라인(CAC/GL23-1997)의 기준으로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시가 가능하다.



1. 어떠한 당류도 첨가하지 않았을 것
2. 당류를 대신할 원재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3. 효소분해 또는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식품의 당류 함유량이 원재료 및 첨가물에 포함된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해당식품의 100g 혹은 100ml 또는 한 끼 식사분, 포장 1개, 기타 1단위당의 당류의 함유량을 표시할 것

## 나. 인증취득 비용

### 1) 특정보건용식품

- 특정보건용식품에는 개별허가형과 규격기준형이 있으며,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기간은 차이가 크다.

개별허가형	규격기준형
생리기능과 보건기능에 관한 유효성, 안전성을 개별허가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지정 성분을 함유
임상시험 비용: 수억엔	임상시험 비용: 수백만엔
임상시험 기간: 1년 이상	임상시험 기간: 4개월 정도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의 관여성분, 보건용도】

구분	관여성분	1일 섭취기준량	표시가능 보건용도
식이섬유	난소화성덱스트린	3~8g	(관여성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폴리덱스트로오스	7~8g	
	구아검 분해물	5~12g	
올리고당	대두올리고당	2~6g	(관여성분)이 포함되어 비피더스균을 증가시켜 장 내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므로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프룩토올리고당	3~8g	
	유과올리고당	2~8g	
	갈락토올리고당	2~5g	
	자일로올리고당	1~3g	
	이소말토올리고당	10g	
식이섬유	난소화성덱스트린	4~6g	식이섬유(난소화성덱스트린) 작용으로 당의 흡수를 완화하므로 식후 혈당치를 염려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 ① 개별허가형 특정보건용식품 신청에 필요한 시험, 예상 비용

### 【동물실험 · 시험관 시험】

#### ■ 동물 대상 안정성 시험

동물을 이용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 또한, 인체가 안전하게 섭취가능한 양을 추정  
가격 예: 6,900,000엔(세금별도)  
1회 섭취시험: 식품에 급성 독성이 없는지 확인  
90일 반복 섭취 시험: 식품에 만성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 ■ Vitro시험

시험관 내에서 세포배양을 이용하여, 식품의 안전성과 효용, 작용기서 등을 검토  
가격 예: 4,970,000엔(세금별도)  
유전 독성시험(반복 변이 시험, 염색체 이상시험, 미소핵검사)

### 【인체대상 임상시험】

#### ■ 용량 설정 시험

식품을 섭취하고, 작용이 예상되는 성분량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 이 시험을 통해 사람이 섭취할 때의 최적 섭취량을 구한다.  
가격 예: 20,437,709엔(세금별도)/80증 예(1군 20명X4군)

#### ■ 유효성평가 인체 임상시험

식품을 섭취하고, 대상 증상에 효과를 있는지 검토  
가격 예: 26,248,320엔(세금별도)/120증 예(1군 60명X2군)

#### ■ 과다섭취 안정성 시험

실제로 식품을 3~5배 과다 섭취하였을 때의 안전성을 확인  
가격 예: 5,691,168엔(세금별도)/20증 예(1군 20명X1군)

#### ■ 장기 섭취 안전성 시험

식품을 12주간 섭취하여 장기간 섭취했을 때의 안전성을 확인  
가격 예: 6,860,160엔(세금별도)/20증 예(1군 20명X1군)

## ② 규격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 신청에 필요한 임상시험, 예상비용

유효성에 관한 개별 임상시험은 필요 없으며, 과다섭취 시험만으로 신청 가능

시험 디자인	1군 시험(비맹검시험)
모니터	성인남녀(일본인)
피험자 수	20명
주요 측정항목	신체측정(체중, 체지방, 체온) 이학검사(혈압, 맥박) 혈액검사(혈액화학검사, 생화학검사: 40항목) 소변검사(건강진단항목: 7항목) 설문조사(신체 변화 등)
검사기간	6주간
1일 섭취량	통상 섭취량의 3~5배
검사시기	섭취 전, 섭취 2주 후, 섭취 4주 후, 섭취 종료 2주 후
예상비용*	5,691,168엔(세금별도)

※ 비용은 일례이며, 증례 수와 실시기간에 따라 변동

※ 이상, 임상시험을 제공하는 수탁연구기관인 주식회사 ORTHO MEDICO의 정보를 기초로 작성

## 2) 기능성표시식품

-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해서는 신고할 식품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의 경우와 식품에 포함된 기능성 관여성분의 연구리뷰의 경우가 있으며, 현재 신고가 수리된 건수의 90% 이상이 연구리뷰에 따른 것이다.

	임상시험	연구리뷰
기능성 표시	'본 제품에는 OO(보건용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 제품과 기능에 관해서 <b>직접적인 표현이 가능</b>	'본 품에는 □□(관여성분)이 포함됩니다. □□에는 OO(보건용도)의 기능이 <b>보고되어 있습니다.</b> ' ⇒ 어디까지나 <b>관여성분의 기능만</b> 이 표현가능(제품자체에 기능이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는 없다)
필요시되는 과학적근거	신고식품을 대상으로 한 승낙된 임상시험 사독 첨부 논문	대상이 되는 기능성관여 성분에 관한 모든 연구자 보고 고찰
과학적 근거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	【CRO에 위탁하지 않고 자사에서 컨트롤하는 경우】 • 임상시험 시설비 • 평가항목 측정기기비 • 윤리위원회 개최비용 • 책임의사 사례금 • 시험협력 스태프 인건비 • 시험자재 제작비 • 시험식품 및 대상식품 • 시험데이터 통계분석 • 논문작성비 ⇒ 상기를 포함하여 합계 약 1,000만엔~	【외부에 일부 위탁할 경우】 • 문헌 데이터베이스 사용료 • 문헌 주문 비용 • SR 작성비 • 전문가 사례금 ⇒ 상기 등을 포함하여 합계 약 250만엔~

※ 주식회사 3sid 정보를 참고로 야노경제연구소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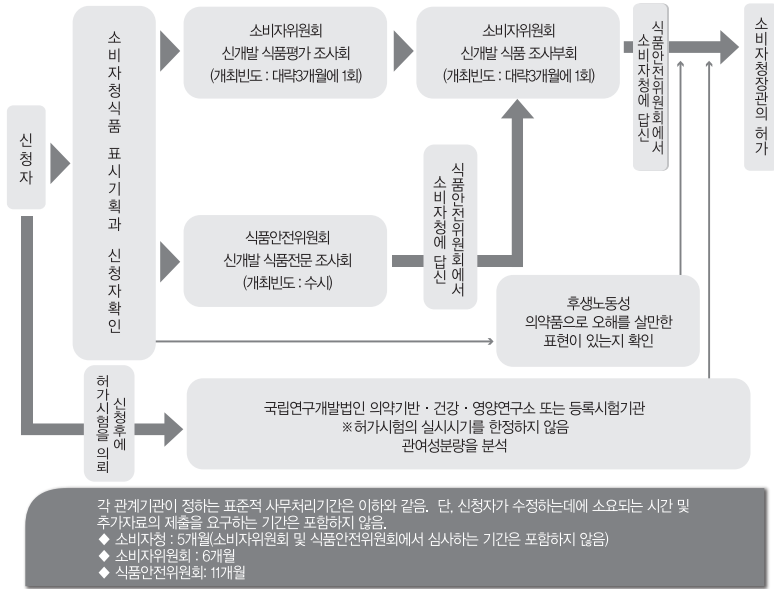
## 다. 사례별 절차

### 1) 특정보건용식품 인정 방법 및 절차

- 해외의 공적기관에서 건강효과 표시가 인정된 식품이라도, 일본산과 동일하게 안정성 및 효과에 관한 심사 수속을 거쳐 소비자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신청은 3개소(보건소, 소비자청 식품표시과, 지정분석기관)에서 할 수 있다.

제출처	신청내용	제출에 관한 유의점 등	신청서 기재내용
보건소	표시허가 신청	주요 영업소 소재지의 보건소에 제출 * 보건소에서 각 도도부현(각 보건소를 관할)을 경유하여 소비자청에 신청서가 송부된다. * 해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소비자청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명칭, 주요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정관)</li> <li>• 영업소 명칭, 소재지(제조소)</li> <li>• 상품명</li> <li>• 상미기한 또는 소비기한</li> <li>• 내용량</li> <li>• 식품이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섭취에 따른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유</li> <li>• 허가를 받고자 하는 표시내용</li> <li>• 원재료의 배합비율</li> <li>• 제조방법</li> <li>• 영양성분량, 열량</li> <li>• 1일 섭취기준량</li> <li>• 섭취상 주의사항</li> <li>• 주의사항(섭취, 조리, 보존방법에 관해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li> <li>• 상미기한의 표시방법, 제조소 소재지 및 제조사의 표시방법, 신청구분,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li> </ul>
소비자청 식품표시과 (관할관청)	심사 신청	* 보건소에 상기 신청서류를 제출 후, 복사본과 함께 심사신청서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명칭, 주요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정관)</li> <li>• 표시 원본</li> <li>• 식품이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섭취에 따른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유, 1일 섭취기준량 및 섭취상 주의사항</li> <li>• 보건용도 등, 각 항목별로 사용한 문헌 등의 요약</li> <li>• 보건용도 등, 각 항목별로 사용한 문헌 등의 일람</li> <li>• 영양성분량 및 열량의 시험검사 성적서</li> <li>• 식품 중 특정보건목적에 이바지하는 영양성분의 정성 및 정량시험의 시험검사 성적서,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한 자료</li> <li>•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li> <li>• (첨부를 요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첨부가 불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이유</li> <li>• 보건용도, 안전성 등 각 항목별로 사용한 문헌 등(유효성, 1일 섭취기준량, 안전성, 관여성분의 물리적·과학적·생물학적 성질을 명확히 한 자료 등</li> </ul>
국립건강·영양 연구소, 또는 등록시험기관	분석 의뢰	* 상기 수속과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분석 샘플에 '표시허가 신청서'와 '심사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분석을 의뢰</li> <li>• '분석결과'(시험성적서)를 입수하여 소비자청에 제출</li> </ul>

**【특정보건용식품의 표시허가 수속 절차】**



**2)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절차(일본에 법인격을 보유한 사업자)**

- 기능성표시식품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고자의 기본정보 제출 후에, 로그인ID 및 임시 비밀번호가 발행(1회에 한함)되며, 신고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여,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를 한다. 또한, 신고사항에 미비사항이 있다고 소비자청이 판단한 경우, 코멘트와 함께 반려 연락이 메일로 신고자에게 송신된다.

<p><b>신고자의 기본정보 내용</b></p>	<p><b>신고자 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번호</li> <li>· 성명 또는 명칭</li> <li>· 우편번호</li> <li>· 주소 또는 소재지</li> <li>· 대표 전화번호</li> </ul>	<p><b>신고 담당자 정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li> <li>· 성명</li> <li>· 전화번호</li> <li>· 메일주소</li> </ul>
<p><b>기능성표시식품 신고정보 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식품 기본정보</li> <li>· 신고 식품의 과학적 근거에 관한 기본정보(일반 소비자 대상)</li> <li>· 안전성평가</li> <li>· 생산·제조 및 품질관리</li> <li>· 건강피해 정보수집 체제</li> <li>·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li> <li>· 표시 내용 / 표시 샘플</li> <li>· 식품관련 사업자 및 신고식품에 관한 기본정보 / 적용기서</li> </ul>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시 체크 포인트】

대상식품 여부  
판단

- ◆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미성년자, 임신부(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자)를 포함, 수유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
- ◆ 기능성관여성분이 명확하며 식사섭취기준이 정해진 영양소가 아닐것.
- ◆ 특별용도식품, 영양기능식품, 알코올 등을 함유하는 음료, 지방과 나트륨 등의 과다섭취로 이어지는 식품이 아닐 것.

안전성 근거

- 이하 중 어느 하나를 “안전성”을 평가한다.
- ◆ 섭취 실적으로 안전성을 설명 할 수 있다.
  - ◆ 기존 정보를 조사하여 안전성 설명 할 수 있다.
  - ◆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다.  
기능성 관여성분의 상호작용에 관해 평가한다.
  - ◆ 기능성 관여성분과 의약품의 상호작용
  - ◆ 기능성 관여성분을 복수 포함하는 경우, 해당성분의 상호작용 유무

생산·제조 및  
품질관리

-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이바지하는 정보로 이하의 정보를 설명
- ◆ 가공식품에 제조시설·종업원의 위생관리체제
  - ◆ 신선식품의 생산·재취·어획 등 위생체제
  - ◆ 규격 외 제품의 출하방지체제
  - ◆ 기능성 관여성분의 분석방법

건강피해 정보수집  
체계

건강피해 정보의 수집체제 정비

기능성 근거

- 이하 중 어느 하나로 표시하고자 하는 과학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 ◆ 최종제품을 이용한 임상시험
  - ◆ 최종제품 또는 기능성 관여성분에 관한 연구리뷰

표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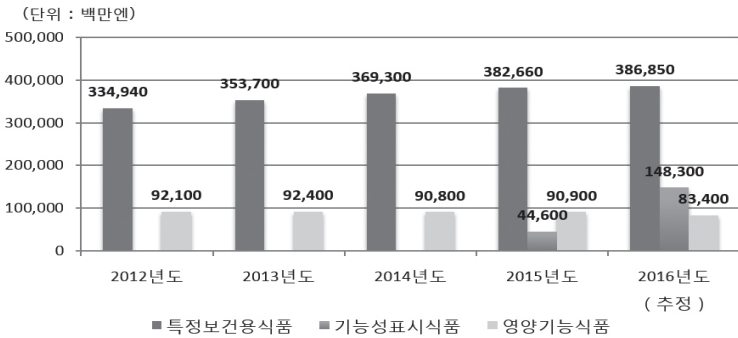
포장용기에 적절하게 표시한다.

### 3. 보건기능식품 시장현황

#### 가. 시장규모 및 추이

보건기능식품시장은 일본 소비자의 건강 지향의 영향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5년 4월에 시행된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2016년도 1,483억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기능식품의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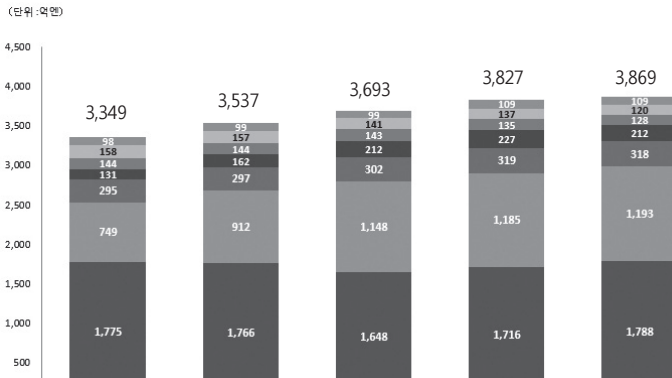


※기능성표시식품제도는 2015년 4월 시행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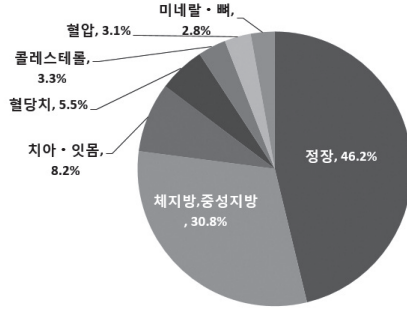
#### 1) 특정보건용식품의 시장규모 및 구성

- 보건용도별 소비자 관심도 결과, 발효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정장(整腸, 장 기능 개선)’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체지방·중성지방(30.8%), 치아·잇몸(8.2%), 혈당치(5.5%)가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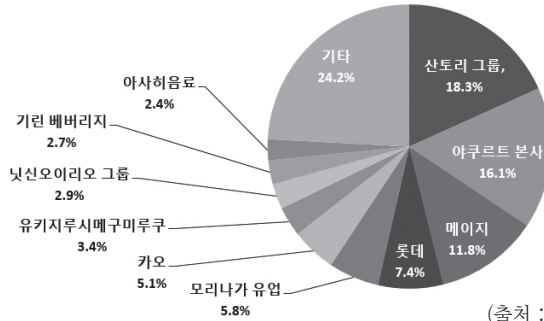
【보건용도별 시장 규모 추이(2012~2016년도)】



【보건용도별 시장 구성비(2016년도)】



【특정보건용식품 시장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2015년도)】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추정)

기업명	카테고리	대표브랜드·제품
산토리 그룹	청량음료	이토엔토쿠차, 쿠로우롱차 등
아쿠르트 본사	발효유제품	아쿠르트400LT 등
메이지	발효유제품	메이지불가리아요구르트 등
롯데	추잉껌	자일리톨껌 등
모리나가유업	발효유제품	비히타스 플레인요거트 등
카오	청량음료	헤르시아 시리즈
유키지루시메구미루쿠	발효유제품	내츄럴메구미 등
닛신오이리오그룹	식용유	헬시리셋터, 헬시콜레스테롤 등
기린베버리지	청량음료	기린메츠콜라 등
아사히음료	청량음료	아사히식사와함께16차W, 미츠아사이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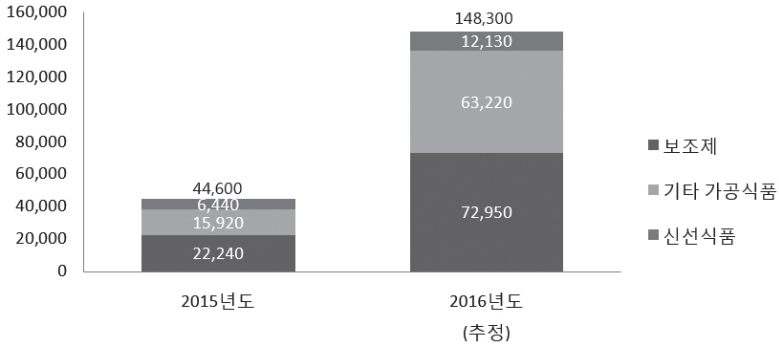


## 2) 기능성표시식품의 시장규모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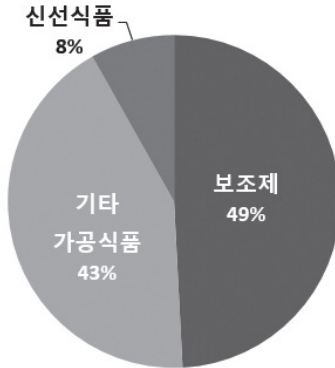
- ‘보조제’와 ‘기타 가공품(일반 가공식품)’의 구성비가 약 50%이며, 신선식품은 10% 미만에 그쳤다.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규모 추이】

(단위 : 백만엔)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구성비(2016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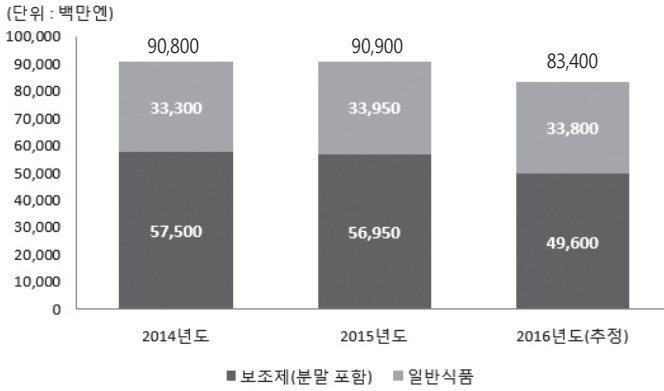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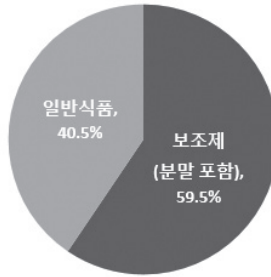
## 3) 영양기능식품의 시장규모 및 구성

- 영양기능식품 시장은 보조제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중에서도 MLM(멀티 레벨 마케팅: 방문 판매)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 2016년도에는 MLM의 일부기업에서 신규 회원 모집 중지 행정 처분의 영향과 아이케어 보조제의 기능성표시식품으로의 전환으로 영양기능식품의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양기능식품 시장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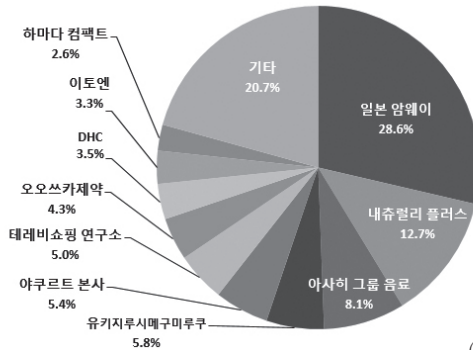


【영양기능식품 시장구성(2016년도)】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추정)

【영양기능식품 제조업체별 시장점유율(2015년도)】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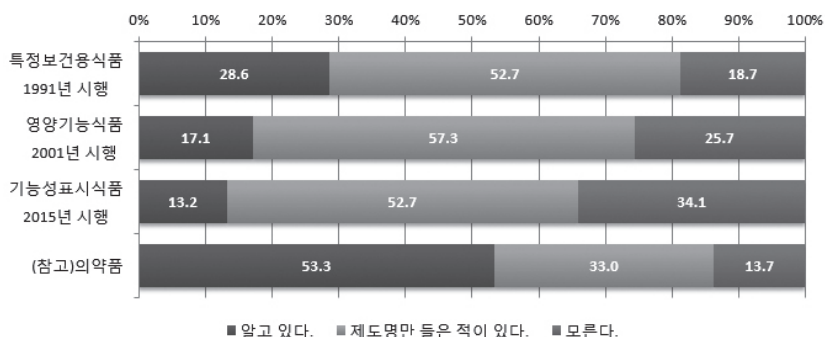
기업명	카테고리	대표브랜드 · 제품
일본 압웨이	건강식품(MLM)	「트리플X」 등
내츄럴리 플러스	건강식품(MLM)	「슈퍼 · 루테인」 등
아사히 그룹 식품	쿠키 · 비스킷	「밸런스업 크림 현미 브랜」 등
유지지루시메구미루쿠	발효유산균 등	「플레인 Fe 1일 철분 마시는 요구르트」 등
아쿠르트 본사	영양음료	「타후만」 시리즈 등
테레비쇼핑 연구소	건강식품(통신판매)	「녹즙삼매」
오오쓰카제약	건강식품(점포)	「네이처메이드」 시리즈
DHC	건강식품(통신판매)	「멀티비타민」 등
이토엔	청량음료	「매일 1잔의 녹즙」
하마다 컴팩트	쿠키 · 비스킷	「밸런스 파워」 시리즈 등

## 나. 소비자 인지도

### 1) 보건기능식품제도의 인지도

- 일본 소비자청에서 2016년 3월에 20~6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각 보건기능식품 제도에 대해 ‘제도는 알고 있다(‘명칭은 들은 적이 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와 ‘자세히 알고 있다’ 응답 합계)가 특정보건용식품이 81.3%, 영양기능식품 74.4%, 기능성표시식품 65.9%으로 특정보건용식품의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명칭은 들은 적이 있지만, 어떠한 것인지는 모른다’는 영양기능식품이 57.3%로 가장 높았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제도보다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각 보건기능식품제도의 인지도 / 응답자: 20~60대 남녀: 3,09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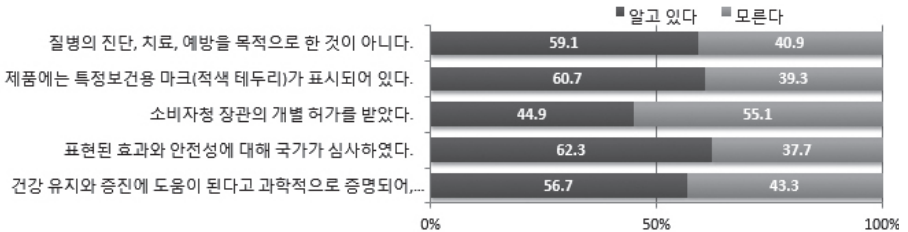


※ 조사 실시기간: 2016년 3월 / 조사방법: 인터넷 소비자 조사 / 출처: 소비자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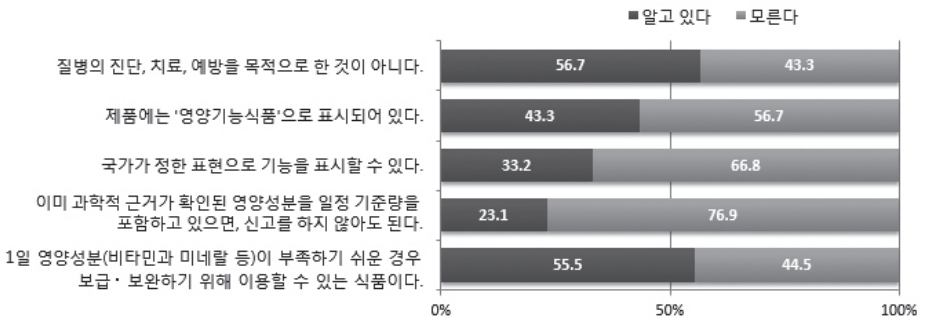
## 2) 보건기능식품의 세부 인지현황

- ‘명칭은 들은 적이 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자에게 특정 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각각의 특징을 언급하여 인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특정보건용식품은 제도가 시행된 지 많은 시일이 지났고 국가의 심사를 통과한 특정보건용식품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기업의 마케팅 활동 덕분에 각 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다. 반면, 특정보건용식품과 비교하여 마케팅활동이 적었던 영양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은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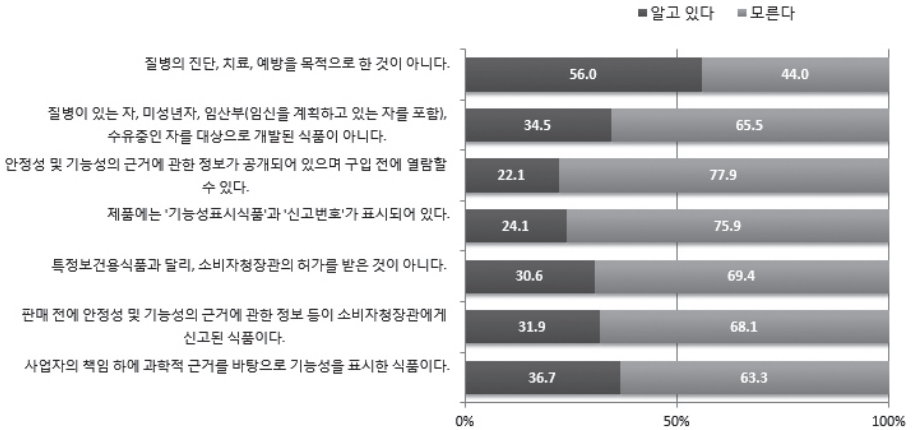
【특정보건용식품에 대한 인지도】



【영양기능식품에 대한 인지도】



###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인지도】



※ 조사 실시기간 : 2016년 3월 / 조사방법 : 인터넷 소비자 조사 / 출처 : 소비자청 자료

### 3) 특정보건용식품 섭취경험

- 야노경제연구소가 2016년 12월초에 30~70대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조사에 따르면 '특정보건용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다'(거의 매일 섭취하고 있다'부터 '섭취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섭취하지 않는다'의 합계)의 비율은 45.7%이며, 약 절반이 특정보건용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섭취 경험의 비율이 높았고, 30~50대 남성, 30~40대 여성의 섭취 비율이 높았다. 반면, 60~70대의 '거의 매일 섭취하고 있다'는 10%를 넘었다.
- 섭취 경험이 있는 식품 종류를 보면, 전체적으로 차류 음료가 56.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뒤를 요구르트(28.6%), 두유(20.9%), 유산균 음료(20.4%)가 이었다.
- 차류 음료, 요구르트, 두유의 섭취 경험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커피 음료(25.0%)와 탄산음료(24.6%)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 남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차류 음료가 30~60대 이상에서 50%를 넘었으며, 70대 이상에서는 40%를 넘었다. 탄산음료는 30대(30.8%), 40대(40.4%), 커피 음료가 30~60대에서 20%를 넘는 등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한편, 요구르트, 두유, 유산균 음료, 낫토, 정제(보조제)는 70대 이상의 비율이 높다.
- 여성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차류 음료가 전 연령대에서 60% 전후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요구르트와 낫토는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정보건용식품의 인지도·섭취 상황/응답자 속성 : 30~70대 남녀 : 1,193명】

전체(n=1193)	8.8	7.0	3.4	10.7	15.8	45.3	8.9	0.1
남성(n=598)	7.7	7.8	3.3	10.0	14.5	47.7	8.9	0.0
여성(n=595)	9.9	6.3	3.4	11.4	17.0	43.0	8.9	0.2
30대	4.2	6.8	5.1	17.8	10.2	45.8	10.2	0.0
40대	6.7	11.7	4.2	11.7	13.3	46.7	5.8	0.0
50대	10.0	5.8	2.5	9.2	25.8	35.8	10.8	0.0
60대	7.4	9.0	0.8	6.6	9.0	62.3	4.9	0.0
70대	10.2	5.9	4.2	5.1	14.4	47.5	12.7	0.0
30대	4.2	5.9	0.8	19.5	23.7	39.0	6.8	0.0
40대	8.4	9.2	2.5	11.8	18.5	37.8	11.8	0.0
50대	8.3	5.0	4.2	8.3	17.5	45.8	10.8	0.0
60대	12.6	4.2	3.4	10.9	14.3	47.1	7.6	0.0
70대	16.0	6.7	5.9	6.7	10.9	45.4	7.6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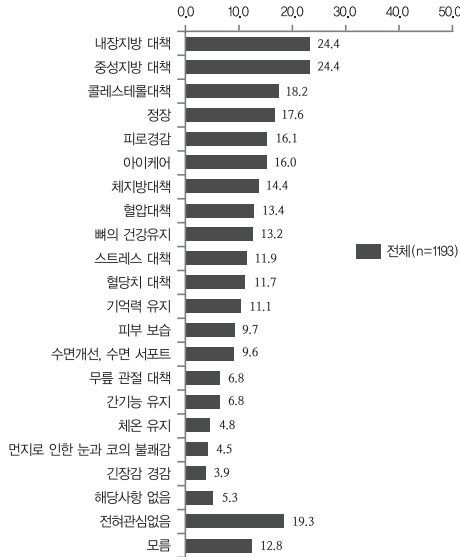
- 거의 매일 섭취하고 있다.
- 월 1~3회 정도 섭취하고 있다.
- 섭취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섭취하지 않는다.
- 특정보건용식품을 모른다.
- 주 1~3회 정도 섭취하고 있다.
- 부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 섭취한 적이 없다.
- 기타

※ 조사 실시기간 : 2016년 12월 / 조사방법 : 인터넷 소비자 조사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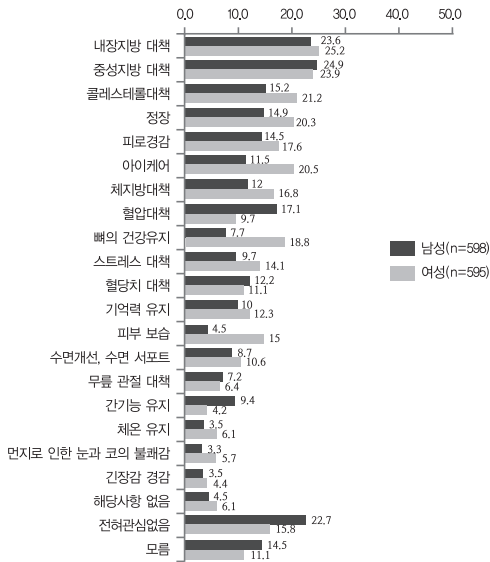
#### 4) 기능성표시식품 섭취 시 기대되는 기능

- 특정보건용식품보다 폭넓은 보건용도가 신고 및 수리되고 있는 기능성표시식품이지만, 30대 이상의 소비자가 관심을 가지는 보건용도는 '내장지방'과 '중성지방'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콜레스테롤 대책(18.2%)', '정장(17.6%)'순이었다. 특정보건용식품의 보건용도와 중복되며, 식생활과 밀접한 기능이 상위를 차지했다. '피로 경감(16.1%)', '아이케어(눈의 피로 경감, 초점 조절 기능, 황반부의 건강유지 등: 16%)'순이었다.
- 남성은 '혈압 대책'과 '혈당치 대책', '간기능 유지'에, 여성은 '뼈의 건강유지', '피부 보습'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 젊은 연령층은 남녀를 불문하고 '혈압 대책'과 '혈당치 대책', '간기능 유지'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젊은 여성은 '피로 경감'과 '아이케어'에 관심도가 집중되었다.
- 또한, 30대 이상이 신경 쓰는 신체 상태와 개선하고 싶은 증상으로 '눈의 피로'와 '피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여성은 미용관련 항목을 신경 쓰고 있지만, 실제로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해서는 건강·기능이 상위를 차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 【관심 있는 보건기능】



### 【성별에 따른 관심 보건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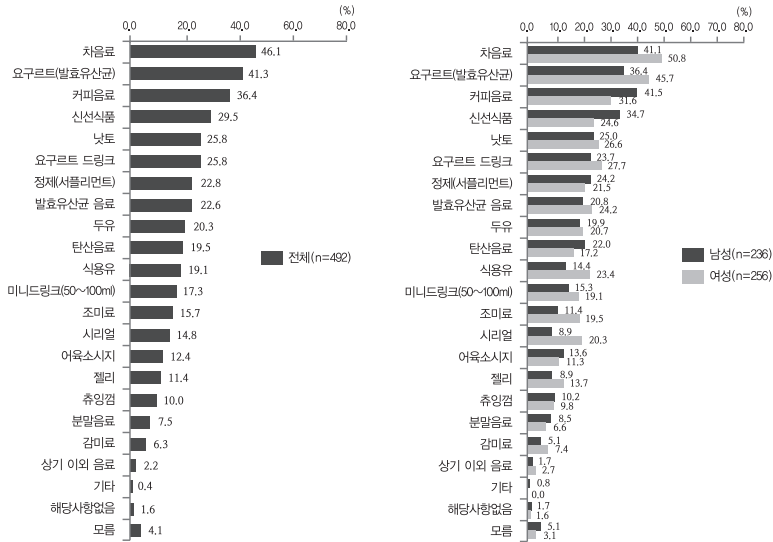


※ 조사 실시기간 : 2016년 12월 / 조사방법 : 인터넷 소비자 조사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 5) 출시 희망 기능성표시식품 종류

-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희망하는 식품 종류로는, 남녀 전체적으로 차류 음료와 요구르트가 40% 이상이며, 커피 음료가 30% 이상, 신선식품은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차류 음료와 요구르트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커피 음료와 신선식품의 비율이 높았다.
- 남성은 커피 음료가 70대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40% 이상이라는 높은 비율이었으며, 70대 이상은 신선식품 비율이 50%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여성은 차류 음료를 50대에서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요구르트는 60대와 70대 이상이 50% 이상, 20대와 30대가 40% 이상이며, 50대 32.7%의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시 희망 기능성표시식품 종류]



※ 조사 실시기간 : 2016년 12월 / 조사방법 : 인터넷 소비자 조사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 다. 일본기업의 제도 이용현황

### 1) 특정보건용식품

- 특정보건용식품 허가·승인 건수는 1,123건(허가: 1,122건/승인: 1건, 2017.04.10.기준)이다. 2016년 9월 27일 시점으로 소비자청이 각 특정보건용식품의 판매상황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특정보건용식품 366건이며, 특정보건용식품 허가를 받았지만 매출부진 등의 이유로 판매중지한 상품도 존재했다.



- 허가 건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동양신약(東洋新藥)은 건강식품 수탁제조기업으로 허가를 취득한 특정보건용식품을 OEM으로 식품·의약품 제조업체, 통신판매회사 등에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허가 보유 건수 2위의 야쿠르트(ヤクルト)는 유산균 음료의 선두기업으로 특정보건용식품제도 시행 초기부터 자사의 유산균을 관여성분으로 하여 정장작용을 보건용으로 하는 특정보건용식품의 허가를 취득하고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해온 기업이다.
- 특정보건용식품 허가·승인 건수는 1,123건 중, 기능성 관여성분으로 식이섬유의 일종인 난소화성텍스트린을 배합한 상품이 384건(구성비 38%)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난소화성텍스트린은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하여 점성이 낮고 가공성이 뛰어나다. 일본 내 유통량은 2만톤이며 특정보건용식품 용도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청량음료와 제3맥주에서의 사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정보건용식품의 관여성분(보건용도: 정장, 식후 혈당의 상승억제, 식후 중성지방의 상승억제)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재이다. 원료 단가가 1,000엔/kg 이하로 추정되며, 기능성소재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며 보조제와 비교하여 1제품 당 단가가 낮은 일반식품에서도 첨가하기 쉽다.

상기와 같이 폭넓은 식품에 첨가 가능하므로 특정보건용식품 중에서도 취득이 비교적 쉬운 규격 기준형 특정보건용식품(1일 섭취기준량: 정장 용도 3~8g/월당치 용도 4~6g/중성지방 용도 5g)이므로 청량음료를 포함하여 폭넓은 일반식품에 난소화성 텍스트린을 배합하여 특정보건용식품으로 전개하는 식품제조업체가 많다.

특히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청량음료 제조업체는 난소화성텍스트린을 배합하여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따라서 난소화성텍스트린은 특정보건용식품으로 많은 허가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능성표시식품의 관여성분으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 【특정보건용식품의 관여성분 허가·승인 건수】

관여성분	건수	관여성분	건수
난소화성 텍스트린(식물섬유)	384	칼슘	27
정어리 펩티드(바릴티로신)	64	콩단백질	27
녹차카테킨	60	유과 올리고당	26
키토산	50	실리움 껍질 추출 식물섬유	23
커피만노올리고당(만노비오스)	46	갈락토올리고당	20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시로타 균주	36	기타	326
카제인 인산펩타이드	34	합 계	1,123

【특정보건용식품 취급 현황】

※ 특정보건용식품 10건 이상 취급 기업

기업명	업종 · 주요제품	보유 건수	판매중※	주요 품목	특징 등
동양신약	건강식 제조(OEM)	247	51	건강식품	특정보건용식품 상품을 기획 개발, OEM 공급. 실제 판매는 OEM 주문회사
아쿠르트 본사	유산균 음료 등	55	17	유산균 음료, 청량음료	유산균 음료의 선두그룹
카오	일용잡화	53	16	차류 음료, 탄산음료	특정보건용식품의 개발을 계기로 식품사업 으로 영역 확장
Mondelez Japan	과자	46	4	껌	해외 과자 제조업체 Mondelez International의 일본법인
AJINOMOTO GENERAL FOODS	커피	42	1	커피, 청량음료	현재는 커피만노올리고당을 관여성분으로 하는 청량음료만 전개
아사히 음료	청량음료	28	11	차, 탄산음료	자사 브랜드 차류 음료, 탄산음료와 매수한 칼피스사의 상품을 판매
이토엔	청량음료	28	13	차류 음료	녹차류 음료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 기능성 음료의 전개에도 힘을 쏟고 있음.
산토리식품 인터내셔널	청량음료	27	11	차, 커피, 탄산음료	청량음료시장 2위의 대기업. 특정보건용식품 의 음료 전개에 적극적.
Mannan Life	곤약	24	8	곤약젤리	곤약젤리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파우치 타입, 포션 타입을 전개
롯데	과자	22	6	껌	주력상품인 휴임검으로 특정보건용식품을 장기간에 걸쳐 전개
타이쇼제약	의약품	21	4	건강식품	일반용 의약품 제조업체의 대기업. 생활습관병 예방을 목적으로 특정보건용식품을 전개
메이지	유제품 · 과자	20	6	요구르트, 청량음료	유제품 · 과자 제조의 대기업. 플레인 요구 르트 톱브랜드로 특정보건용식품을 전개.
코바야시제약	의약품	18	11	건강식품, 차류 음료	일반용 의약품 제조업체의 대기업. 건강식품 라인업 중에 특정보건용식품을 전개
마루하니치로	식품 (수산가공품)	17	7	어육 소시지, 젤리	수산가공품을 중심으로 한 가공식품을 전개. 어육 소시지를 특정보건용식품으로 전개
사토엔	차 · 식품 통신판매	16	7	분말차(건강식품)	통신판매로 분말차의 특정보건용식품을 전개
Kaigen Pharma	의약품	15	3	청량음료	저분화화 알긴산 나트륨이 관여성분의 콜레 스테롤 억제 특정보건용식품을 판매
에자키구리코	과자 · 유제품	15	3	껌, 과자	특정보건용식품을 취급했지만, 최근에는 기능성표시식품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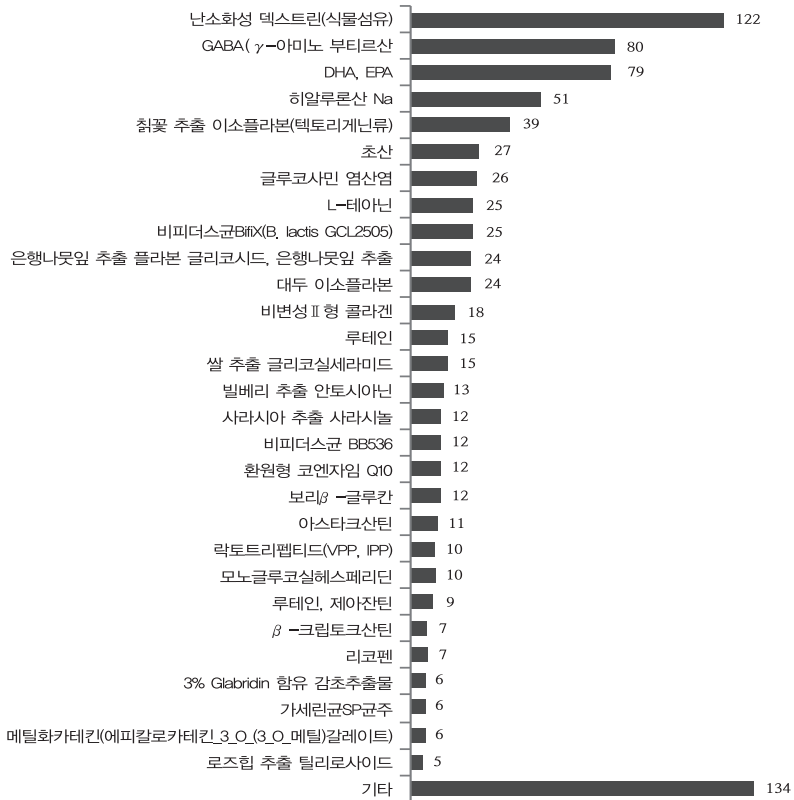
기업명	업종 · 주요제품	보유 건수	판매중※	주요 품목	특징 등
기린베버리지	청량음료	14	1	탄산음료(콜라)	청량음료시장 점유율 4위의 종합음료 제조업체. 특정보건용식품 콜라가 히트
닛신 오이리오 그룹	유지 · 유량	13	10	식용유, 건강식품	식물성 오일 제조 대기업. 식용유를 중심으로 특정보건용식품을 전개
Dydo Drinco	청량음료	11	3	차, 커피 음료	청량음료 시장의 중견 종합 제조업체. 최근, 건강 소구 상품 전개에 주력
SENMI EKISU	업무용 조미료, 기능성식품 소재	11	0	청량음료 (건강식품)	자사 개발 소재 '정어리 펩타이드'를 관여성분으로 하는 특정보건용식품 허가 취득
일본 코카·콜라	청량음료	11	1	차류 음료, 탄산음료	청량음료시장 시장점유율 1위. 2017년에 '코카·콜라'로 특정보건용식품을 발매.

※ 판매중은 소비자청 2016년 9월 27일 기준

## 2) 기능성표시식품

-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상황을 보면, FINE JAPAN(55건)과 동양신약(東洋新藥, 38건)은 건강식품을 수탁제조하고 있다. 특히 동양신약은 '참꽃 추출 이소플라본' 등 독자적인 소재를 전개하여 차별화를 두며 건강식품 판매회사 등에 OEM을 제조하고 있다.
- 신고 건수 2위의 일본수산은 대기업 식품제조업체로 해산물의 기름에 많이 포함된 n-3계 고도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필수지방산 · EPA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의료용 원료, 식품 원료로 공급하거나 자사의 가공식품에 EPA를 배합하고 있다. '바다로부터, 건강 EPA life' 브랜드로 매일 맛있고 간편하게 EPA · DHA를 섭취할 수 있는 수산통조림, 냉동 반찬, 레토르트 수프 등 다양한 기능성표시식품을 출시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식품구입에 까다로운 시니어층(65세 이상)을 비롯해 여러 연령대에서 섭취하기 쉬운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관여성분으로 보면 특정보건용식품과 마찬가지로 난산화성텍스트린으로 신고한 건수가 가장 많고, 과학적 증거가 가능하며 일반식품에도 사용하기 부담없는 원재료 가격이라는 점에서 청량음료와 과자 등 폭넓은 가공식품에서 사용된다.

【기능성표시식품 관여성분 사용빈도】



※ 신고 수리 총 842건 중 소비자청 공표자료를 바탕으로 집계(2017년 4월 11일 현재)

【기능성표시식품 기업별 수리 건수】

※ 기능성표시식품 수리 10건 이상인 기업

기업명	업종 · 주요제품	보유 건수	주요 품목	특징 등
FINE JAPAN	건강식품 (OEM, NB)	55	건강, 분말수프	건강식품 수탁제조, 드럭스토어 등에 자사 브랜드제품 판매
일본수산	식품 (수산가공품)	43	수산가공품	수산가공품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식품제조업체, EPA를 관여성분으로 한 제품을 각종 전개
동양신약	건강식품 (OEM)	38	분말음료(건강식)	특정보건용식품과 같이 기능성표시식품을 OEM 공급. 독자적인 소재(관여성분)도 개발.
에자키 구리코	과자 · 유제품	37	요구르트, 과자	요구르트, 초콜릿으로 기능성표시식품 전개를 적극화
아사히 그룹 식품	식품 · 과자	27	건강식품 · 동결 건조식품	건강식품 및 동결건조식품 미소원장국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을 전개
Mikakuto	과자	22	캔디	캔디 시장 대기업. 과자로 일찍이 기능성표시식품을 전개
이토엔	청량음료	21	각종 청량음료	기능성음료 전개에 주력. 주력 차류 음료, 채소음료 등 폭넓은 품목으로 전개
FANCL	건강식품 · 화장품	17	건강식품	기능성표시식품제도에 주력. 적극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신고, 판촉을 실시
Mizkan 그룹	식품 (식용 식초)	26	식초음료	식초 관련 식품 시장점유율 1위 기업. 희석 타입의 복수 플레이버 식초음료로 신고
아사히맥주	주류	14	무알콜음료	무알콜음료(맥주맛, 카테이맛 음료)로 가능성을 전개
Morishita Jintan	건강식품	14	건강식품	건강식품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을 적극 전개. 직전에는 일반식품으로 개발 · 전개
이온토펬류	이온 PB개발	12	각종 식품	소매 대기업 · PB브랜드 '토펬류'로 기능성표시식품을 전개
마루하니치로	식품 (수산가공품)	12	수산가공품	수산가공품을 중심으로 한 식품 대기업. 어육 소시지, 수산통조림 등으로 전개
가고메	채소음료 · 조미료	11	토마토 · 채소주스	주력상품인 토마토주스, 채소주스로 전개. 토마토 주스가 매출 호조.
기린베버리지	청량음료	11	차, 탄산음료	주력 차류 음료 브랜드, 탄산음료, 커피 음료 등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을 전개
POKKA SAPPORO Food & Beverage	음료, 분말수프	11	음료, 분말수프	레몬과즙 관련, 인스턴트 수프가 주력. 레몬음료, 수프로 수리
후지필름	사진 필름 등	11	건강식품	건강식품시장에 이업종 참여기업. 다이어트 보조제 등으로 기능성표시 전개
오오쓰카제약	의약품, 식품	10	건강식품	건강식품, 청량음료, 레토르트식품으로 기능성표시 식품을 전개

※ 신고 수리 총 842건 중 소비자청 공표자료를 바탕으로 집계(2017년 4월 11일 현재)

### 3) 영양기능식품

- 일본 식품업체는 자사 상품의 소구 포인트로 영양소와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영양기능식품제도를 활용하여 기존상품의 개선 또는 제품 개발단계에서 영양기능식품 규격기준을 충족시킨 후 영양기능식품으로 표시한다.
- 영양성분 칼슘과 비타민D, 철분은 소비대상에 따라 유통형태가 다르다. 성장기 어린이와 여성 대상을 대상으로는 보조제, 고령자 대상으로는 과자와 음료 형태로 제조된다.
- 비타민A는 아이케어 보조제에 주로 사용된다. 루테인, 빌베리 추출 안토시아닌도 아이케어 보조제에 주로 사용되는데, 기능성표시식품 관여성분으로 수리되어 기능성 표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영양기능식품 표시를 중지하고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전환하는 제품이 다수 존재한다.
- 영양기능표시제품들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에서 일반식품으로까지 다양하며 가격대도 고액의 건강식품부터 100엔대 일반식품까지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영양기능식품 일람】

기업명	업종 · 주요제품	영양기능식품 대표상품	종류	영양기능표시	용량	가격 (세전)
일본 암웨이	건강식품 (MLM)	트리플X3셀	서플리먼트	철,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오틴,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C, 비타민E	3종류×각 124정	10,380엔 (회원가)
내추럴리 플러스	건강식품 (MLM)	슈퍼 · 루테인	서플리먼트	비타민A	540mg×100정	11,000엔
아쿠르트 본사	유산균 음료	타후만	영양 드링크	비타민B6	110ml	143엔
테레비쇼핑연구소	통신판매	녹즙삼매	서플리먼트	비타민C	3.3g×60포	3,000엔
오오쓰카제약	식품, 의약품	네이처메이드 슈퍼 멀티비타민 & 미네랄	서플리먼트	아연, 구리, 비오틴	120정 (120일)	2,400엔
유키자루시메구미 루쿠	유제품	플레인Fe 1일 철분을 마시는 요구르트	발효 유제품	철, 비타민B12, 엽산	190g	105엔
DHC	건강식품 (통신판매)	멀티비타민	서플리먼트	비타민B1 · 비타민C · 비타민E	30정	353엔
하마다 컴팩트	과자	밸런스 파워 빅 블랙카카오	쿠키	칼슘, 철	2봉(4분입)	130엔
이토엔	청량음료	매일잔 녹즙	음료	비타민E	200ml/팩	100엔

기업명	업종 · 주요제품	영양기능식품 대표상품	종류	영양기능표시	용량	가격 (세전)
FANCL	건강식품	멀티비타민	서플리 먼트	비타민B2, 비타민E	30정	648엔
아사히 그룹 식품	과자, 건강식품	밸런스업 크림 현미 브랜 블루베리	크래커	칼슘, 철	72g (2매×2봉)	150엔
다는 재팬	유제품	다는 덴시아	발효 유제품	칼슘, 비타민D	(80g×2)×2	228엔
House Wellness	기능성음료	1일분 비타민	청량음료	비오틴	190g · 캔	190엔
네슬레 재팬	음료, 식품료, 과자	네슬레 미로 오리지날	분말음료	칼슘, 철, 비타민D	240g · 봉	380엔
로토제약	의약품	세노빅 밀크 코코아 맛	분말음료	칼슘, 비타민D, 철	280g	1,200엔
POKKA SAPPORO Food & Beverage	음료, 분말수프	마카노 쟁키	청량음료	아연	100ml · 캔	190엔

※ MLM…Multi Level Marketing : 네트워크 비즈니스 · 방문판매

#### 라. 인증 취득/신고 수리 · 표시의 장단점

특정보건용식품은 국가(소비자청)가 허가한 식품인 만큼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기능식품 시장점유율이 높은 산토리식품인터내셔널과 카오 등은 특정보건용식품을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보다 폭넓은 기능(보건용도) 신고가 수리되어, 소비자의 건강 상태에 보다 잘 맞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특정보건용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인정되기 어려운 보건용도(면역력 회복 등)에 대해서는 인증 취득, 신고 수리의 가능성이 낮아 사업자에게 위험도가 높다.

#### 【제도별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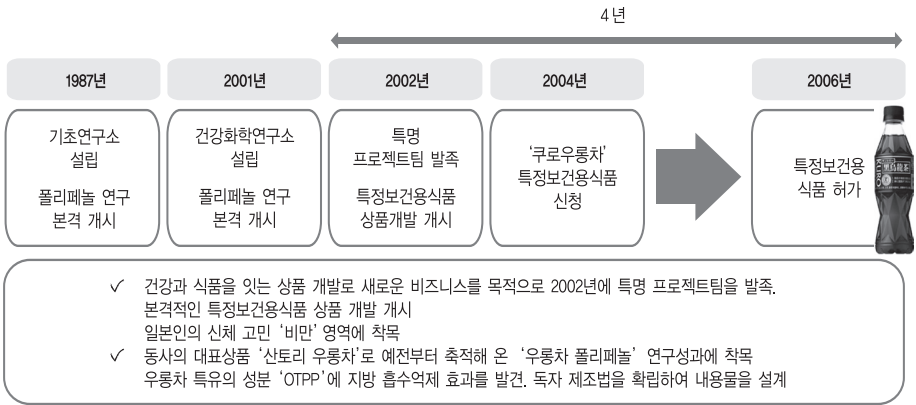
제도	장점	단점
특정보건용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소비자청)가 허가한 식품이므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다.</li> <li>• 소비자에게 보건용도를 표시하여 전달할 수 있다.</li> <li>• 식품의 기능에 대해 소비자가 자신의 상태에 보다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넓은 생리활성기능이 기대되는 식품 · 소재의 경우, 기능성표시에 따라 기능(보건용도)이 한정되어 이용자가 한정될 우려가 있다.</li> </ul>
기능성표시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보건용식품보다도 폭넓은 기능(보건용도)의 전개가 가능하다.</li> <li>• 소비자에게 보건용도를 표시하여 전달할 수 있다.</li> <li>• 식품의 기능에 대해 소비자가 자신의 상태에 보다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표시 외에도 표시해야 할 항목이 많다. 특히 소용량 패키지 제품에는 식품표시가 뺄뻣해진다.</li> </ul>
영양기능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영양성분과 기능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li> </ul>	

## 4. 사례연구

### 가. 특정보건용식품 사례 「산토리식품인터내셔널 ‘산토리 쿠로우롱차OTPP」

2004년에 특정보건용식품으로 신청하여 2006년에 허가를 받았다. 우롱차는 동사의 간관제품으로 식사와 함께 섭취하여 ‘식후의 중성지방 상승을 20% 억제’, ‘지방배출을 약 2배로 증가’ 효능과 마시기 쉬워 발매 1년 만에 판매 수량 1,000만 케이스를 돌파하는 등 히트상품이 되었다. 발매 후에 매출이 급증한 후, 붐이 사그라지면서 매출이 급락했다. 하지만, 2015년 3월에 스타일리쉬한 디자인으로 용기를 바꾸며 타깃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것이 전환점이 되어 매출을 회복하고 있다.

【특정보건용식품 사례 「산토리식품인터내셔널 ‘산토리 쿠로우롱차OT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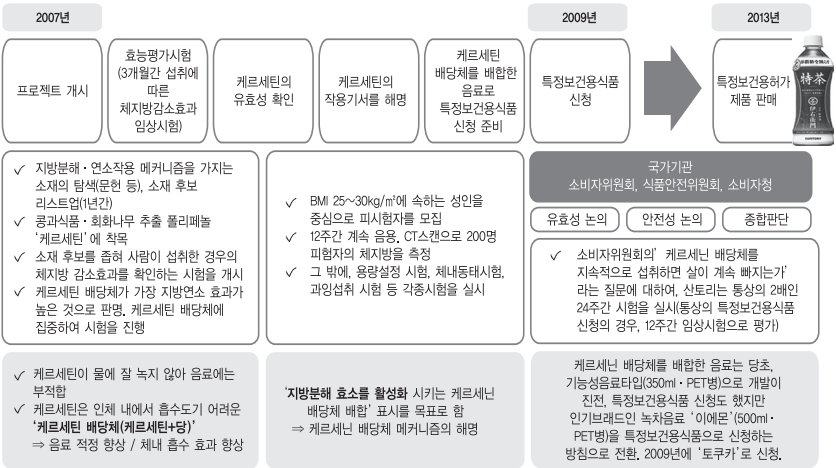


### 나. 특정보건용식품 사례 「산토리식품인터내셔널 ‘산토리녹차 이에몽 토쿠차」

산토리식품인터내셔널은 2013년 10월 특정보건용식품 최초로 ‘지방분해’ 기능 음료를 발매했다.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2016년 11월에는 누계판매 수가 10억개를 돌파했고 산토리식품인터내셔널의 특정보건용식품 음료로는 가장 빠른 판매 속도를 보였다. ‘이에몽’ 브랜드는 맛은 물론 체지방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지지를 얻었다.



【특정보건용식품 사례 「산토리식품인터내셔널 '산토리녹차 이에몽 토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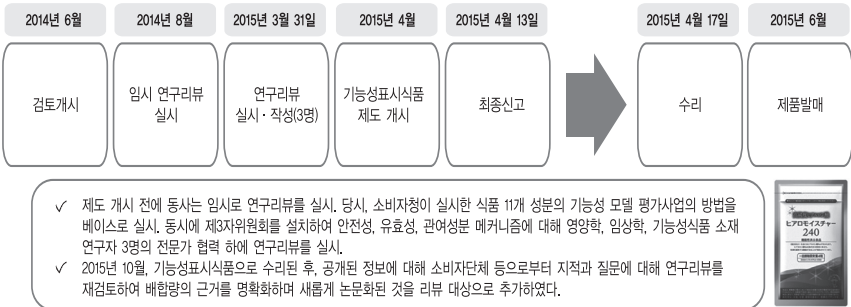


다. 기능성표시식품 사례 「큐피 '히아로 모이스처240'」

히알루론산은 건강식품을 비롯하여 가공식품에 사용되며, 일본 내를 비롯하여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큐피는 히알루론산의 주력 원재료 공급사이기도 하며, 히알루론산 보조제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취득하여 자사의 통신판매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수리 실적을 바탕으로 타 기업에 히알루론산을 공급하며 연구리뷰 작성 등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를 서포트하고 있다.

2016년 봄, 히알루론산 보조제의 주요 고객층을 피부에 관한 고민이 늘어나는 60세 전후 여성에서 잠재 고객인 젊은 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2탄 기능성표시식품 '히아로 뷰티'를 발매하였다.

【기능성표시식품 사례 「큐피 '히아로 모이스처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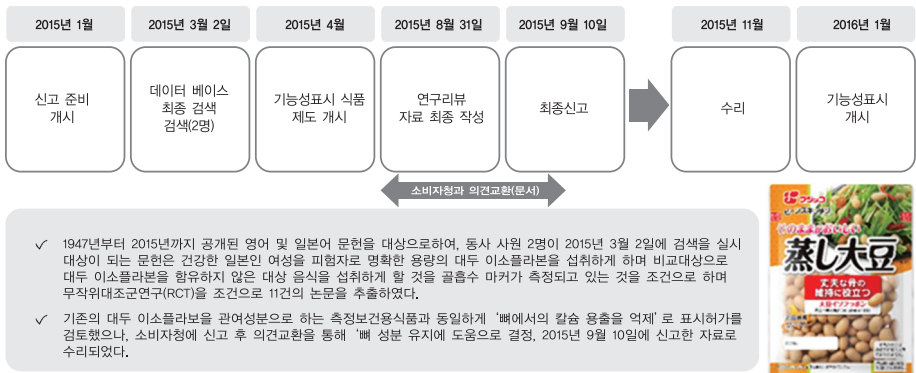


### 라. 기능성표시식품 사례 「FUJICCO ‘무시다이즈」

대두를 중심으로한 콩 가공품 제조판매 대기업인 동사는 대두를 찐 상태로 레토르트 파우치에 포장한 ‘빈즈 키친 그대로가 맛있는 무시다이즈’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하여, 2015년 11월에 수리되었다. 같은 해 12월 하순부터 패키지에 ‘튼튼한 뼈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기능성을 표시하고 리뉴얼 발매하여 월 3만 상자 전후의 출하량이 월 6만 상자까지 확대되었다.

연구리뷰와 논문 선정기준 등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실시하였고, 제도가 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으로 신고하였다. 그래서 신고표시 이외에도 패키지 디자인과 캐치프레이즈의 허용도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기능성표시에 대해서도 당초에 신고한 표시 ‘뼈에서부터 칼슘 용출을 억제한다.’에서 소비자청과 의견 교환(문서)이후 ‘뼈 성분유지에 도움을 준다.’로 결정하여 2015년 11월에 수리되었다.

【기능성표시식품 사례 「FUJICCO ‘무시다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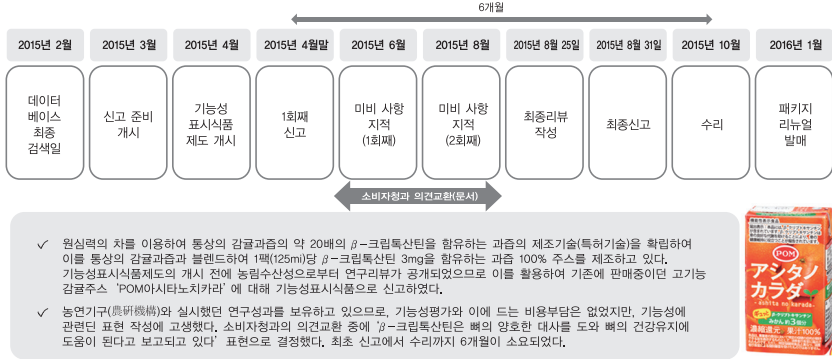


### 마. 기능성표시식품 사례 「에히메 음료 ‘POM 아시타노가라다」

천연감귤 과즙 100% ‘폰쥬스’ 브랜드를 전국에 공급하고 있는 동사는 일본 특유의 감귤인 온주감귤에 포함된 β-크립톡산틴의 기능성에 대해 1994년경부터 사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당초에는 발암억제작용에 착안했지만 이후에는 뼈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판명하여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2010년부터 3년간 농림수산성의 ‘새로운 농림수산정책을 추진하는 실용기술개발사업 위탁사업’에 참가하여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연구기구(농연기구)·과수연구소를 비롯하여 농연기구·식품종합연구소, 가나자와대학, 에히메대학과 함께 β-크립톡산틴을 연구하여 작용 메커니즘 등을 해명했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β-크립톡산틴 고함유 감귤 주스 ‘POM 아시타노가라다’를 2013년 3월에 상품화하는 등 고기능 감귤 주스의 개발·전개에 주력해 온 기업이다.

【기능성표시식품 사례 「에히메 음료 'POM 아시타노카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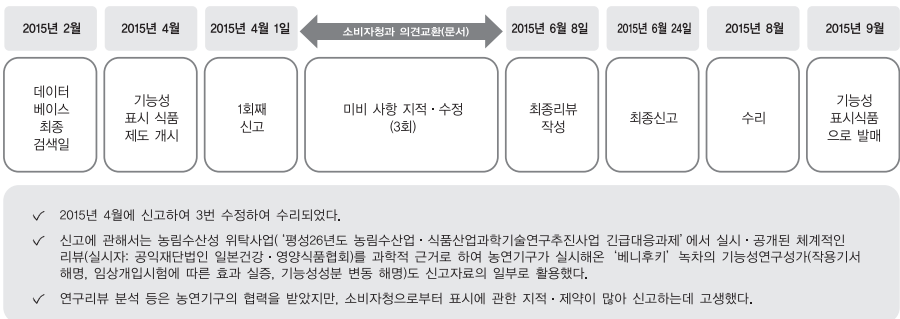


바. 기능성표시식품 사례 「JA가고시마 녹차 산업 '베니후키 녹차티백」

농업·식품산업기술기구(농연기구)가 녹차품종 '베니후키' 녹차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를 1998년부터 실시한 결과, 기능성 관여성분인 메틸화 카테킨에 꽃가루알레르기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을 발견했다.

2004년부터 농연기구와 공동으로 메틸화 카테킨을 다량 함유·유지하기 위한 재배방법과 녹차 제조법 연구를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농림수산성 예산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 긴급전개사업 : 수출에 대응 가능한 일본 녹차 생산체계의 실증연구'에서 메틸화 카테킨 함유량의 편차를 일정 범위 내(±20% 이내)로 줄이는 생산공정관리법을 확립하는 연구를 했다. 당초에는 특정보건용식품 허가를 목표로 했지만, 알레르기 증상의 완화를 보건기능으로 표시하기 어려우므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전환하였다.

【기능성표시식품 사례 「JA가고시마 녹차 산업 '베니후키 녹차티백」】



### 사. 영양기능식품 사례 「야쿠르트 분사 '타후만' 시리즈」

'타후만' 시리즈는 1980년에 발매된 주력상품으로 고려인삼을 주로 하여 각종 기능성 성분과 영양 기능성분을 배합한 드링크이다. 영양기능식품으로 판매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영양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된 2001년 직후부터 비타민 B6을 성분으로 영양기능식품표시('비타민 B6은 단백질로부터 에너지 생산과 피부, 점막의 건강유지를 돕는 영양소입니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리즈 4개 제품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중 3개 제품은 비타민 B6의 영양기능식품 표시를 하고 있다.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타후만' 시리즈는 리뉴얼을 계기로 판촉을 강화하여 판매량 수가 49,245천 병으로 전기 대비 4.1% 증가했다.

【타후만 시리즈 제품 일람】

제품명	영양기능표시 (비타민B6)	용량	가격 (세금별도)	특징
타후만	○	110ml	143엔	고려인삼 100mg 배합한 시리즈의 대표상품
타후만V	○	110ml	143엔	고려인삼에 로알젤리, 비타민류를 배합한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제품
타후만 슈퍼	○	110ml	171엔	고려인삼을 1,000mg 배합한 프리미엄 제품
타후만 DRY	×	120ml	143엔	고려인삼에 로알젤리, 비타민류 등을 배합한 탄산 제품



타후만 시리즈  
'타후만' / '타후만V' / '타후만 슈퍼' / '타후만 DRY'

### 아. 영양기능식품 사례 「하마다컴팩트 영양기능식품 쿠키·비스킷」

영양기능식품, 쿠키, 웨하스, 초콜릿, 파이킵, 타르트킵 제품을 판매하는 동사는 1991년에 칼슘을 배합한 웨하스를 발매했으며, 1995년에는 현재의 주력브랜드인 Bar 타입의 쿠키 '밸런스 파워'를 발매했다. 영양기능식품제도 시행은 2001년 제도 발족 초기부터 주력 쿠키, 웨하스를 영양기능식품으로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판용 쿠키 웨하스를 전부 영양기능식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영양기능성분으로 칼슘과 철을 기본으로 하며, 제품에 따라 배합성분이 다르다. 또한, 영양기능식품 표시는 하지 않지만, 제품에 따라 비타민 8종(비타민 A, B1, B2, B6, B12, E, 나이아신, 판토텐산)과 비타민D를 배합했으며, 최근 수요가 높은 식이섬유, 콜라겐과 안토시아닌과 같은 기능성소재·성분을 배합한 제품도 볼 수 있다.

시판용 제품의 주력판로는 드럭스토어로 일본에서 드럭스토어 시장판매 확대에 따라 매출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드럭스토어에서는 건강·기능을 강조한 식품 구성을 강화하고, 전용 매장을 확보하고 있어 영양기능식품을 비롯한 영양·기능 소구가 소비자에게 일정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봄 신상품(2017년 3월 6일 발매)】

제품명	영양기능표시		용량	가격 (세금별도)	특징
	Ca	Fe			
밸런스 파워 빅 아몬드	○	○	2봉지(4개)	130엔	아몬드 토핑으로 바삭한 식감의 영양 기능 쿠키
밸런스 파워 빅 현미 그레놀라	○	○	2봉지(4개)	130엔	발아현미 토핑으로 바삭한 식감의 영양 기능 쿠키
밸런스 파워 현미 그레놀라	○	○	6봉지(12개)	270엔	



2017년 봄 신상품 (밸런스 파워 시리즈)  
 '밸런스 파워 빅 아몬드' / '밸런스 파워 빅 현미 그레놀라' / '밸런스 파워 현미 그레놀라'



2017 일본 보건기능식품제도 핸드북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오사카지사

---

발행연월 2017. 5

발행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연락처 061-931-1114

자료문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02-6300-1679)

---

-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홈페이지([www.kati.net](http://www.kati.n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